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표지 면지 교체)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Program

□ 행사개요

- 주 제 :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 일 시 : 2017. 09. 26(화) /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남인순(여성가족위원회) · 진선미(안전행정부) · 신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성범죄박멸팀
- 후 원 : 서울특별시

□ 세부 일정

구분	시간(총180분)		세부 내용
1부	14:00~14:05	5'	개회 및 내빈소개
	14:05~14:20	15'	인사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 국회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축사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좌장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4:20~14:35	15'	발제1 - 매체 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상 : 전선미 팀장 (DSO)
	14:35~14:50	15'	발제2 - 아동 청소년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 실태 및 피해 사례 : 권주리 사무국장(십대여성인권센터)
	15:05~15:20	15'	발제3 -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GL)
	15:20~15:35	15'	발제4 -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운영 개선방향 : 하예나 대표 (DSO)
	15:35~15:40	5'	휴식
2부	15:40~16:40	60'	패널 토의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류레카 김기문 대표 아프리카 TV 전동준 전략 본부장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김호범 DSAC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 남희섭 대표 국회 톡톡 시민감시단 : 국회 톡톡의 구체적 제안사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수사과장 장우성 총경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16:40~16:55	15'	질의·응답
	16:55~17:00	5'	종합정리 및 폐회

Contents

●● 개회 및 내빈소개

●● 인사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i
국회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iii
국회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v

●● 축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발제문

발제 1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상	
진선미 팀장 (DSO)	
발제 2 아동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 실태 및 피해 사례	
권주리 사무국장 (십대여성인권센터)	
발제 3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GL)	
발제 4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운영 개선방향	
하예나 대표 (DSO)	

●● 토론문

토론 1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2 류레카 김기문 대표	
토론 3 아프리카 TV 전동준 전략 본부장	
토론 4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김호범	
토론 5 DSAC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 남희섭 대표	
토론 6 국회 특특 시민감시단 : 국회 특특의 구체적 제안사항	
토론 7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수사과장 장우성 총경	
토론 8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토론 9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참고자료

국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비교 및 검토 / 소희진	
--	--

인사말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송파병)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밤이 길어지는 시기’인 추분(秋分)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열리게 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를 뜻 깊게 생각하며, 함께 주최해주신 진선미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과 DSO(디지털성폭력아웃),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성범죄박멸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바쁘심에도 지혜를 나누기 위해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의 일상화로 다양한 의사소통의 편의성은 늘어난 반면 익명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행위의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디지털플랫폼 발전에 따라, 여성들의 개인정보, 사진, 영상 등을 불법 유포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 상 성적 괴롭힘을 일삼는 디지털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크고, 무차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특성 탓에 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각종 성폭력은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폭력은 주로 해외를 근거로 한 SNS 및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더불어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나, 그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됨에 따라 국내 및 해외기업 운영 및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기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시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님, 발제를 준비해주신, DSO의 하예나 대표님, 전선미 팀장님,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님, 법무법인 GL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해주시는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국회톡톡시민감시단,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장, 김기문 뮤레카 대표이사님, 남희섭 DSAC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대표님,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관리과 인터넷안전팀장님,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님,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해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신용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늘 일선에서 활약해주시는 우리 ‘DSO(디지털성범죄아우트)’와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성범죄박멸팀’, 이번에 처음 발족한 ‘DSAC(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분들에게도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심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동의없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1년 단 341건에 불과했던 디지털성범죄는 2016년에는 5185건으로 증가해 무려 1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커서 한번 사생활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격적 살인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분들 뿐만 아니라 웹하드 업체들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인터넷 방송, P2P, 웹하드는 우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지만 이를 악용해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통경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신 업체 관계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각종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인순 의원님과, 신용현 의원님과 함께 제가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가 성평등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신용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신용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남인순 위원장님, 진선미 의원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DSO(디지털성범죄아웃)’와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성범죄박멸팀’, ‘DSAC(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사회적·경제적 윤택함을 제공한 동시에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전파성과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댓글을 달고, 타인의 사적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촬영해 게시, 유포하거나 심지어 강간을 모의하는 등 ‘디지털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라넷’이라는 몰래 카메라 사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헤어진 연인과의 동영상을 올리는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의 특성 상, 가해자의 처벌은 유한 하지만 피해자의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는 무한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빠르게 발달한 새로운 기술에 걸맞은 사회적 의식, 윤리,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사회적 의식과 윤리,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성폭력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및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 측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와 웹하드 업체들도 참석해 주신 만큼 매체별 성폭력 실태와 양상을 진단해보고, 디지털성폭력 규제 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듣고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상

전선미 팀장 (DSO)

디지털 성폭력의 구분과 실태 종합 분석

발제 전선미 DSO 모니터링 총괄

작성자

하예나(박수연)

실태조사

소라넷(2015년 10월~2015년 12월)

자료수집(모니터링)

한강괴물, 제프, 이동준, 조용한, 김제제, 연 썸(전선미), 제이

자료 분석

윤제이, 하예나, 썸(전선미)

해외기반 한국어 사이트 49개(2016년 7월)

자료수집(모니터링) 및 분석

종운

kate

아미

득구

썸(전선미)

저마눔

페이스북(2015년도 이후)

DSO

트위터(2017년 7월-8월)

자료 수집

SNS성범죄 박멸 팀

자료 분석

전선미

텀블러(2017년7월-8월)

자료수집 및 분석

윤제이 전선미

0.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동의어로 사이버 또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가 있다. 그러나 사이버 또는 온라인의 개념은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자료집에는 사회의 법익에 반하는 음란물을 포괄하는 성범죄와 구분하여 개인인 피해자가 실존함을 강조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로 통일한다.¹⁾

디지털 성폭력은 크게 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소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과 복제되는 특성과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²⁾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드러내며, 한 개인이 벌이는 가해 행위가 아닌 집단으로 행해지는 가해라는 것에 중점을 둔 단어이다,

우선 오프라인 상의 도촬 협박 강간 등으로 제작되는 제작형 가해는 곧 유포형 가해로 이어지고 이에 참여, 소비하는 각 개인들로 인해 가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 즉 유포된 하나의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를 ‘복수 음란물’(Revenge Porn) 또는 ‘셀프 카메라 유포’등으로 칭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집단의 가해라는 개념이 희석되며, 유포자와 피해자만의 관계를 중시하거나 각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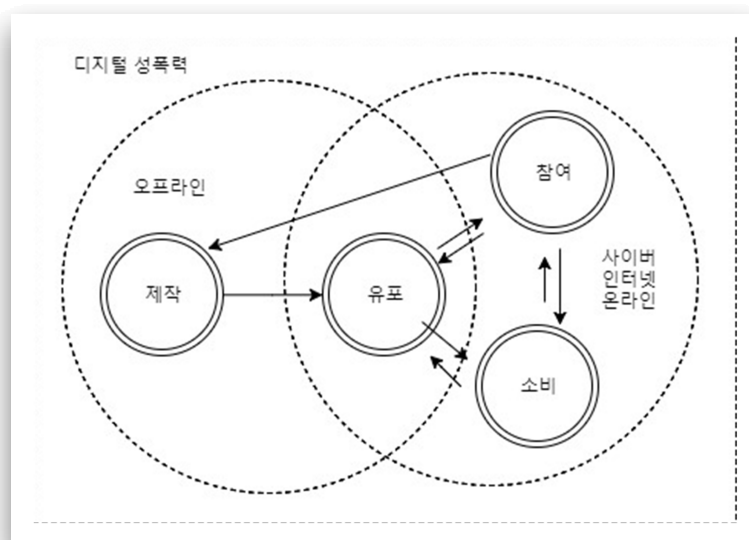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 성폭력 의 관계도,

1)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비교 및 검토 (소희진)

2) 온라인online-오프라인offline

인터넷internet(network) 과의 접속 상태(공간)와 비접속 상태(공간)를 분리하는 개념.

1.오프라인(offline)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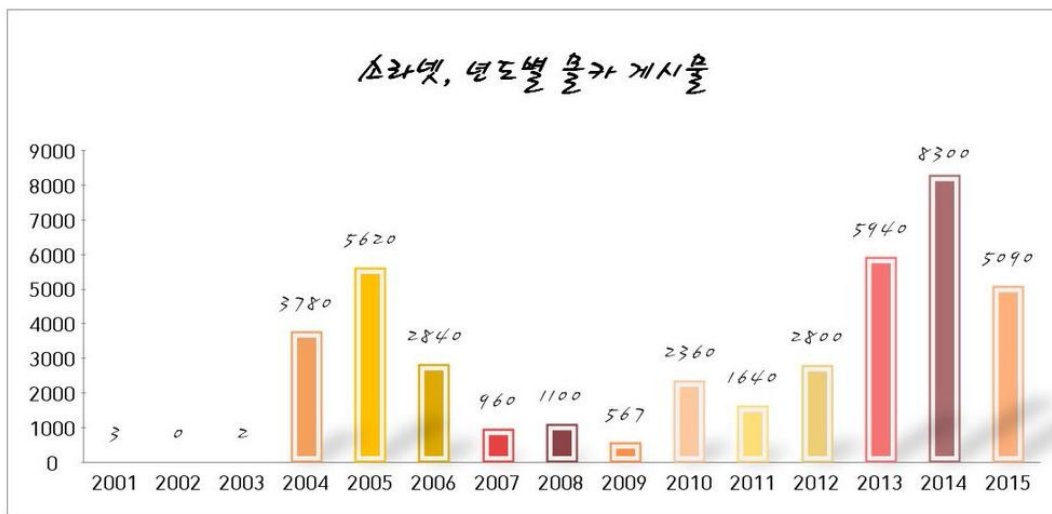
1.1 제작형 가해

몰카 촬영과 동의 하 촬영 후 비 동의 하에 소지하는 것, 이미지 도용 혹은 해킹을 통한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몰카 촬영은 주로 휴대폰과 소형 위장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2000년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 되고 이를 이용한 도촬이 문제시 되면서, 2004년 카메라 촬영 음을 60 데시벨 이상으로 탑재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어플 시장이 생성되며 얼마든지 무음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져, 제조사가 카메라 촬영 음을 탑재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에 지난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 하였음에도 강제성을 띄는 몰래 카메라 촬영 방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광고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³⁾

제작형 가해는 피해자를 구속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유포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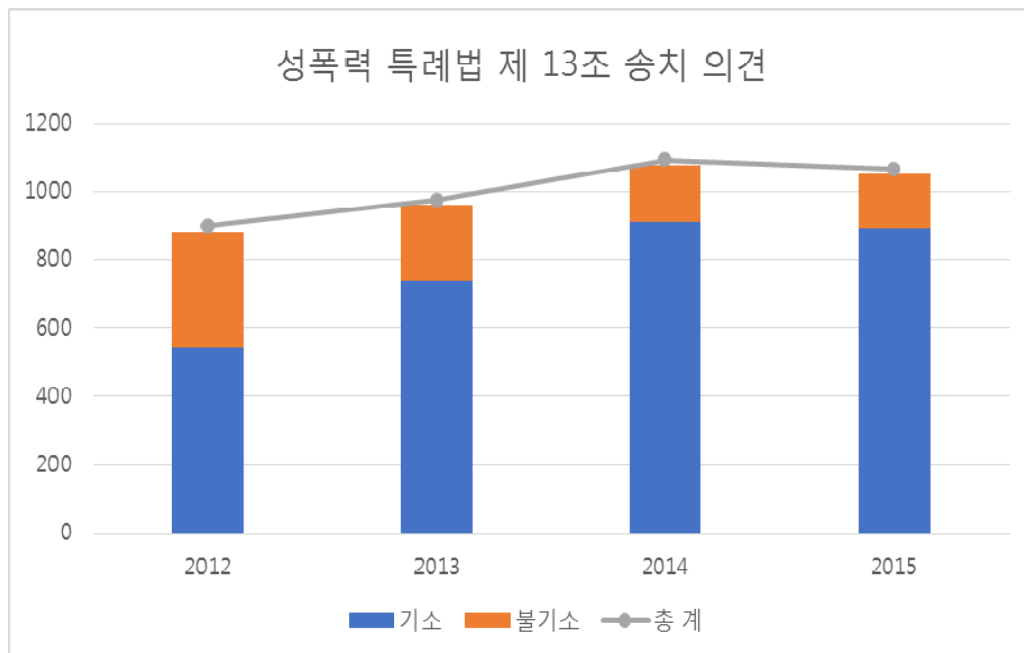
1.2 실태

1.2.2 표면적인 증가세



2015년 10월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지목된 소라넷을 조사하며 몰카 게시물이 업로드 되던 ‘홈쳐보기’ 게시물을 전체 아카이빙 하여 정리한 표를 토대로 보았을 때, 몰카는 200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 했다. 이는 핸드폰 카메라의 상용화가 이루어진 때였으며 찰칵 소리의 법제화 이후 급속도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다. 해당 표에 드러나는 범죄 건수는 검경에서 공개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통계자료보다 월등히 많은 수이다, 이는 ‘몰래 카메라’의 특성상 집계되고 있지 않은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비교 및 검토(소희진)



1.2.3 피해와 가해 관계 (소라넷 통계 몰래카메라 64% 나머지 다른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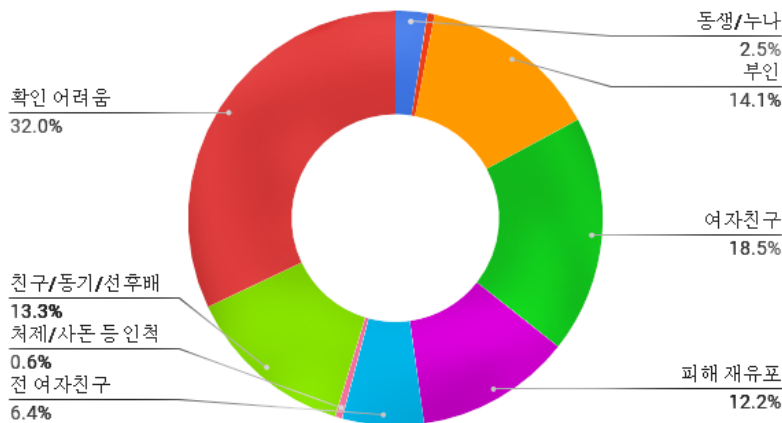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여자친구가 18.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4.1%로 뒤를 이었다. 지인으로 확인되는 13.3%의 피해자 다음으로 헤어진 연인의 유포범죄는 6.5%로 확인 되었다. 그 외에 동생이나 누나, 딸, 친인척 등의 순이었다. 게시 글에 피해자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게시물은 30.1%였다.

앞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일수록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제도 하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언급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대책마련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놀라왔던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내가 ‘어떠한 관계’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권력과 힘이 있음을 은연 중 나타내었다. 자신이 피해자의 Leader임을 말하는 가해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⁴⁾

4) 디지털 성범죄 아웃 소라넷 모니터링 보고서 전선미

피해자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소라넷 사이트 DSO 모니터링자료 2015.11.1.~24일]

2.온라인(online)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

2.1 유포형 가해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대방 본인의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동의 하에 유포된 모든 이미지 및 개인정보 등을 말한다.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이 존재하며, 유포로 인하여 3명 이상의 가해자가 존재할 시 이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유포형 가해 시 이용되는 피해자 정보에 따라 세부 항목을 분리 할 수 있는데,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거주지, 전화번호,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및 이미지’ ‘성폭행 이미지(강간)’ ‘사생활 이미지(성관계, 반라, 자위 행위 등)’ ‘도촬 이미지’ ‘변형 이미지’ 등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유포형 가해는 영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⁵⁾ 이러한 유포행각을 방관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영리적 이윤을 얻는다는 전제로 바라본다면, 유포 가해와 동일하다. ⁶⁾⁷⁾

2.2.참여형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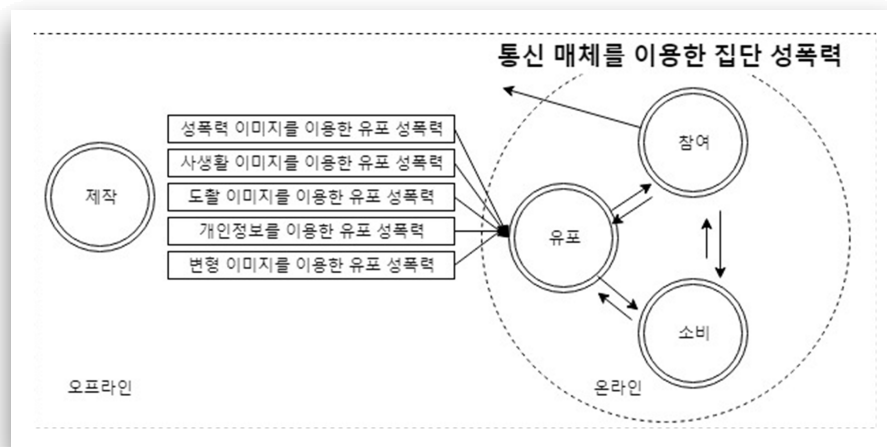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게시 글에 모욕성 댓글을 달거나, 유포형 가해자에게 더한 성폭력을 요구 하는 경우, 오프라인 상의 촬영 성폭력에 직접 참여하거나, 유포된 개인정보를 통해 피

5) 「웹하드에 27만개를 올려 1억 6천만원을 쟁긴 이가 구속됐다」 **연합신문**, 2016년 06월 24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6/06/24/story_n_10649482.html

6) 「'불법 음란물 유포' 웹하드 운영자 적발」 **YTN**, 2015-07-26 09:03 http://www.ytn.co.kr/_ln/0103_201507260903124404

7) 「아동 음란물 수십만 건 유포...수억 쟁긴 일당 불잡혀」 **JTBC**, 입력 2015-09-01 08:3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5580&pDate=20150901

해자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촉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도 해당된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 전화번호, 주소, 학교 등으로 유추되는 신상정보를 **이용한 참여 성폭력**이다. 단톡방, 채팅, 음성을 통한 가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노골적인 ‘모욕, 희롱’이 아닌 다수의 (단순한 인사 등)접촉,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골뱅이(약물 등에 정신을 잃은 여성) 강간 모의(초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성폭행 이미지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이다. 인터넷 상으로 일종의 (1) ‘능욕’ ‘욕설’ ‘성폭행 주문’ 등의 행동을 하는 참여 집단과 이중 차출되어 (2)오프라인 환경에서 성폭행에 참여 하는 이들로 나뉘는데. (2)참여자들은 (1)참여의 요구를 수행하거나 강간하는 등 한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릴레이식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며 인증샷, 즉 ‘성폭행 이미지 제작 및 성폭행 이미지를 이용한 유포 성폭력’을 반복하였다. 또한 초대 시 ‘모텔비’라고 불리는 초대비용을 내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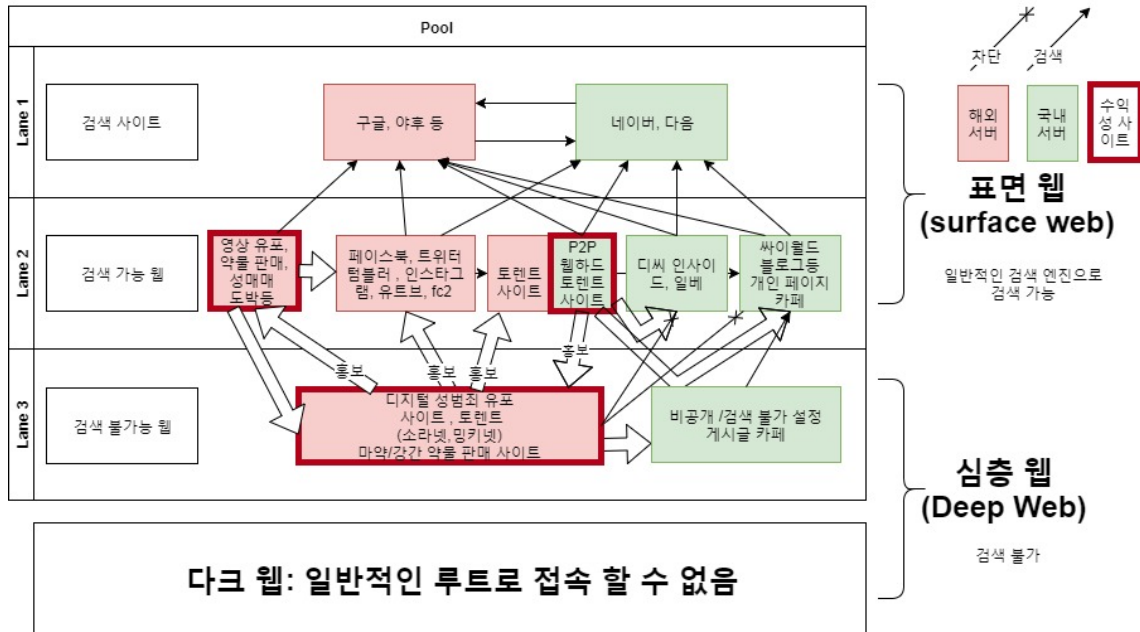
한 달간 업로드 된 게시 글(11월)을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연인, 부부 관계 등의 신뢰관계라고 여겨지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 인신매매, 약물, 집단 성폭력 모두가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범죄가 크게 공론화 된 후 표면적으로는 확인되는 수가 급속도로 줄었으며 예약제로 변경된 모습을 보인다.

2.3 소비형 가해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이다.’

3. 웹사이트 특성으로 분류하는 실태.

온라인 성폭력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공간 속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인터넷 플랫폼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플랫폼을 ‘웹’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 W3)의⁸⁾ 개념과 웹의 특성과 연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line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검색 사이트인 구글 야후 네이버 다음 등을 칭하며 검색 엔진(search engine)을 통해 월드 와이드 웹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해당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line2까지의 web을 ‘표면웹’이라고 칭한다. line3의 경우 비밀 게시물 또는 색인 불가능 설정의 검색 되지 않는 페이지들을 말하며 심층 웹(deep web)이라고 칭한다.

3.1 한국의 웹 사이트 규제 방침

한국을 근거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성폭력 이미지를 이용한 유포 성폭력’과 ‘사생활 이미지를 이용한 유포 성폭력’ ‘변형 이미지를 이용한 유포성폭력’ ‘도촬 이미지를 이용한 유포 성폭력’ ‘개인정보를 이용한 유포성폭력’ 모두 음화반포죄⁹⁾ 혹은 명예 훼손 죄에 속하며 정보통신망¹⁰⁾법 위배로서 규제되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를 관리할 의무가 주어지며, 피해자의 고발 시 경찰 측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처

8) 인터넷

9)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1]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0) 정보통신망 Data Communication Network

별로 이어진다. 11) .

하지만 한국 서버가 아닌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정책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에서 한국어 기반의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정책은 서버 근거지인 해외의 법을 따르고 있다. 즉 한국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규제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어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이에 대한 완벽한 차단은 힘든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음화 반포죄, 명예 훼손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이미지를 이용한 유포 성폭력’의 성기 및 얼굴 부분이 편집되어 유포되거나, 또한 유포된 이미지가 신체의 일부분이라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는 경우.
- (2) 직접적인 폭력 언어가 아닌 은어 사용을 하는 경우.
‘야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위해서 ‘동야’, ‘di동’이라고 변형하여 검색한다. 이는 검색차단 혹은 자동 필터링 기능을 우회하게 된다. 이에 따르는 새로운 필터링 규제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은어 전환이 이루어진다.
- (3) 관리자의 규제가 있기 전 잠깐씩 유포하고 게시 글을 빠르게 삭제하는 경우.
- (4) 해외 시민권자영주권자 일시 국내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하는 경우.

3.2 검색 엔진

아래는 한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검색 엔진 사이트들의 상세 비교이다.

검색 엔진은 인터넷의 링크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검색 환경을 조성한다. 현실세계로 치환해서 본다면 가게의 가판대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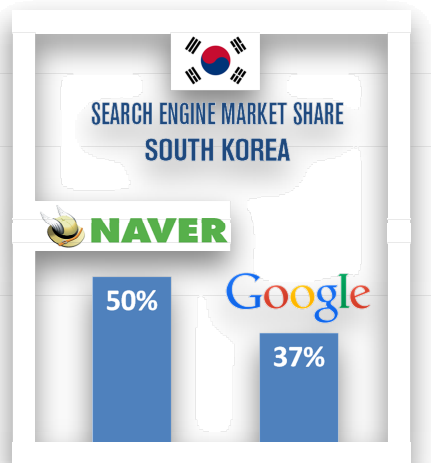
	국내 서버		해외 서버	
	네이버	다음	bing	google
보호 방침	최근 음란물 필터링 AI(인공지능) ¹²⁾ 를 개발하여 이미지 부분에 적용 시켰으며, 이는 연중무휴로 음란성 권리 침해성 이미지를 탐색하고 있다.	현재 클린센터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중이다.	국가 또는 지역별로 유해정보 차단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한국 지역의 콘텐츠 규제 수준은 높음이다. 우회 방법이 있다.	세이프서치기능이 있으나, 무용지물에 가깝다.
유해단어 직접 검색시	차단	차단	차단	검색가능
유해단어 우회 검색시	차단	차단	검색가능	검색가능

11)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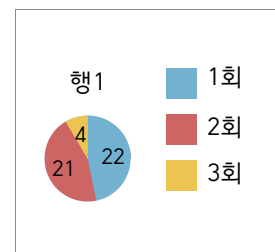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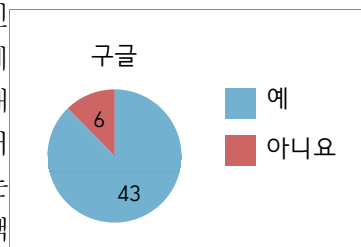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1.1 검색 엔진 보호 방침과 실태

2015년 11월 Search monitor의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랫폼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절대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국내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네이버, 다음의 경우 이미지, 게시 글에 적용되는 유해정보 차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유해 이미지 차단. (2)유해 검색어 차단.¹³⁾ 이는 신고와 더불어 자체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최근 AI(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여 좀 더 상시적인 감시 체제를 실행 하고 있다. 이에 2016년 해외 기반 한국어 사이트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시행할 때에도 한국어 웹이 아닌 외국어 기반 웹을 사용 했는데 그때에 사용 된 것이 google 검색 엔진이다. 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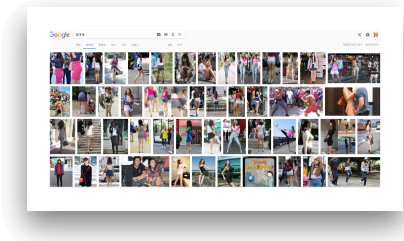
2016년도 구글 검색은 유해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매우 간편했는데, 1회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가 22개 었다.

접속률에 이어 주목되는 큰 문제점은 특정 유해 단어를 검색하지 않아도 유해 게시물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길거리’ ‘학교’ ‘동생’ ‘누나’등의 일반적인 검색을 했을 때도 유해 검색이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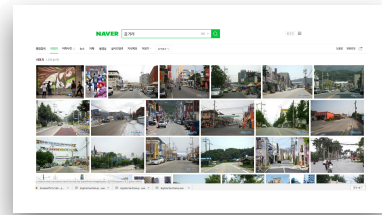
12) 「네이버에 뜬 음란물, 인공지능이 24시간 필터링한다」 **블로터**2017.07.31. 채반석 <http://www.bloter.net/archives/286501>

13) 3.1 참조

14) 해외기반 한국어 사이트 49개(2016년 7월)



<비교1> 블특정 여성의 사진이 가득함, 유해 사이트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



<비교 2>길거리 사진

이처럼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환경은 판이하게 다른데, 이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이버와 구글 검색의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된다. 구글은 현재 ‘Page Rank’¹⁵⁾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C-Rank’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검색	네이버	구글
알 고 리 즈	‘C-Rank’ ¹⁶⁾	‘Page Rank’ ¹⁷⁾
상위 노출 정보	플랫폼의 신뢰도 중심의 검색어 노출	해당 페이지의 링크가 많이 연결/노출되었는지 중심이 되어 검색어가 노출

네이버 검색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시 블로그 혹은 게시 사이트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평소 유해 매체가 올라왔거나, 그 사이트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이슈가 아닌 경우 상위 노출 정보가 될 수 없다.¹⁸⁾

하지만 구글 검색의 경우 해당 페이지의 링크가 얼마나 많이 연결 되었는지가 중요 하다. 그 링크를 사람들이 많이 요구 할수록 중요도가 높거나 유용한 게시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이버보다는 구글의 검색환경이 유해사이트 홍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유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구글’을 통해 홍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해 사이트들은 ‘구글’을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page rank**의 특징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15) 구글 페이지랭크(PageRank) 알고리즘과 HITS 알고리즘의 비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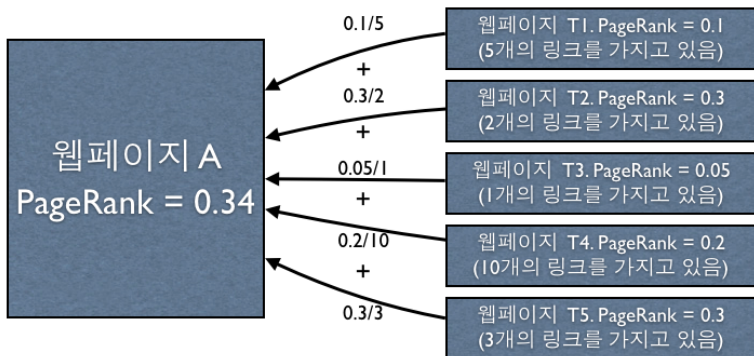
16) <http://www.bloter.net/archives/267330>

17)조성문 ‘쉽게 설명한’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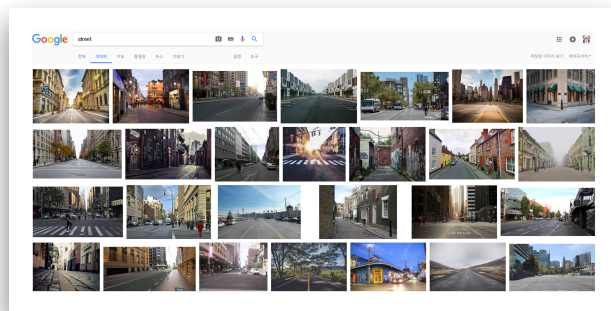
<https://sungmooncho.com/tag/%ED%8E%98%EC%9D%B4%EC%A7%80-%EB%9E%AD%ED%81%AC/>

18) 이의 대한 문제점 제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요구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신뢰가 있는 또는 인기 있는 웹 페이지가 발언했는가에 따라 나열되며 이것이 마케팅 산업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성적으로서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하여(클릭 유도) ‘길거리, 여자, 학생’등의 키워드를 이용한 게시 글을 만들고 자신들의 웹 사이트 링크를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글의 내용은 중요 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게시 글을 썼느냐 구글의 페이지 알고리즘 시스템을 쉽게 도표화 한 것이다에 따라 상위 검색어에 지정 출처 16)이 되며. 또한 그 웹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 글 또한 검색 상위에 올라오게 된다.



이는 국내 유해 사이트 업체들이 ‘초상권’에 대한 국내 법령과 의식 부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생겨난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영어로 ‘street’길거리 검색 시 길거리가 뜬다.

초상권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민법상의 소송이 가능하지만 링크 클릭의 유도 매체로 사용되었을 경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결국 일반 여성의 사진이 성적 상품으로써 이용되는 것이다.

3.3 검색 가능한 표면웹과 딥웹

	국내 서버				해외 서버			
보 호 방침	음란물 규제 개인정보 침해 규제				음란물 규제 없음 개인정보 침해 규제			
	네이버 플랫폼	다음 플랫폼	커뮤니티	다운로드 제공 사이트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커뮤니티	성인 사이트
국내 웹 검색 가능 영역			성적 비하 농담	도촬 이미지				
해외 웹 검색 가능 영역	유해 사이트 홍보 (도촬 이미지,	유해 사이트 홍보 (도촬 이미지	유해 사이트 홍보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도촬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도촬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검색 불가 영역	유해 사이트 홍보 (도촬이미지	유해 사이트 홍보 (도촬 이미지	유해 사이트 홍보 (도촬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도촬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아동 성폭력 이미지

검색 엔진의 차단은 1차적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길은 디지털 이미지가 올라온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는 지우는 일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유포된 이미지 등의 개인정보 삭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¹⁹⁾, 대개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삭제가 아닌 피해자가 권리침해 이미지를 직접 색인 하여 일일이 신고하거나 사이버 장의사 등의 대리인을 구해 서류를 접수 하여 삭제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⁰⁾ 이를 다운로드 하거나 소지함을 규제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삭제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 되어 재유포를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올라오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아예 삭제 조취에 응하지 않으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는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정책으로 이를 막으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호스팅 주소를 사용해 웹 사이트를 유지한다. 또한 최근 사이트 운영자들은 HTTP의 발전 버전인 HTTPS²¹⁾를 이용하여 패킷 감청을 방지할 수 있으며, (패킷)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에는 해외 공조수사와 함께 검색 차단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3.3.1 네이버 블로그/카페, 다음 블로그/카페, 티스토리 등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 웹(Blog) 시스템 및 카페(cafe/소그룹 모임)시스템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심층 웹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전문개정 2008.6.13.]

20)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21)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HTTP over TLS,[1][2] HTTP over SSL,[3] HTTP Secure[4][5])는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HTTPS는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이 개발했으며, 전자 상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표면적인 부분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등 각 플랫폼의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및 유해 사이트에 근접한 사이트들의 간접 홍보 매체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표면적인 영역이 아닌 심층 웹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비밀 설정의 카페, 비밀 설정의 블로그 혹은 서로 공개 영역의 게시물 등에는 여러 불법적인 정보 공유가 문제시 된 적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마사지 카페’등으로 홍보하며 내부의 상세 게시물은 사실 성매매 관련 사이트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실상 단속이 매우 어렵다. 2013년도 이후 크게 공론화가 되어 많은 사이트들이 차단 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22)

또한 ‘픽업아티스트’²³⁾ 라는 이름으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게시판 등이 존재해 논란이 되었다.

‘또한 다음카페의 이중격투기, 아이 러브 싸커 등 남성 회원이 대부분인 카페에서는 적나라한 음란물이 공유 되고, 여자 연예인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 반면 여성 회원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는 성적인 단어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커뮤니티 운영원칙에 위배 된다면 바로 삭제 조치를 하는 등의 편파적 운영이 문제시 되고 있다.’²⁴⁾

3.3.2 일간 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게임 리뷰 커뮤니티 등

커뮤니티는 각 특성에 따라 판이한 성질을 보인다. 커뮤니티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여 만들어졌는가. 유저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인가에 따라 범죄가 발생 빈도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위에 명기한 범망을 피해나간 유포 범죄 형태²⁵⁾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일간베스트, 디시 인사이드 등이다. 특히 현재 일간 베스트 커뮤니티는 한국 커뮤니티로서 많은 문제 지적을 받았었다. 자주 드러나는 범죄 유형은 2가지이다.

(1. 인증식 범죄)

특히 일간 베스트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 인증’ ‘여동생 인증’ 등 자신의 가족의 이미지를 이용한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해당 게시물들은 이용 원칙에 의해 빠르게 삭제되나, 해외 사이트에서 이를 불법 복제 하여 전시하기도 한다.

(2. 몰래 카메라 혹은 은꼴 사진 범죄)

‘직찍’사진 모음 ‘은꼴’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 신원 미상의 여성들의 사진이 전시된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미지의 발견 빈도가 높으나 미성년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점,

22) <http://news.joins.com/article/12193742> 불법 성매매 통로 네이버 카페 ... "적발 4년 새 10배"

23) PUA 여성을 도구화 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24) 국회 토론회

25) 3.1 참조

성기 부분이 가려져 있는 점,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어 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방송 통신 심위 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제보가 없다면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참여하는 가해자가 해당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려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사이트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매체로도 이용된다. 게시판 카테고리에 ‘여성 사진 카테고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이 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곳에 게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개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웹하드, P2P’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 몇 곳은 **심층웹(deep web)**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 존재한다. 이하 네이버 다음과 같이 카페, 블로그를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카페와 블로그 등이 ‘성매매 광고’ 혹은 디지털 성폭력이 일어나는 근거지로 쓰이는 경우가 존재하며 1.2의 범죄는 이를 홍보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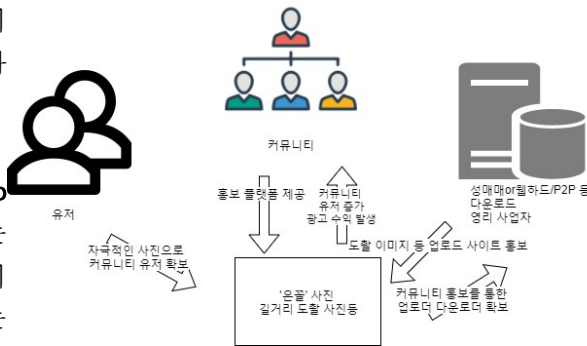
특히 ‘애플 닷컴’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중학생-고등학생)의 사진이 주로 올라오는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게시되어있는 이미지를 불법 복제 하여 ‘은폴 사진’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My(개인 웹 페이지)를 홍보 한다. 이들은 접근자의 추천과 레벨²⁶⁾을 확인하여 자신의 개인 웹인 MY 의 접속 허가를 내주는 등 폐쇄적인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한다. 또 내부적으로 검색 불가능한 웹(deep web)의 링크를 게재하여 유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3.3.3 웹하드, 토렌트, P2P등 다운로드 플랫폼 제공 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P2P등의 사이트는 내부 시스템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제공자와 파일 배포자가 영리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로 나뉜다. 웹하드, P2P는 파일 제공 서비스를 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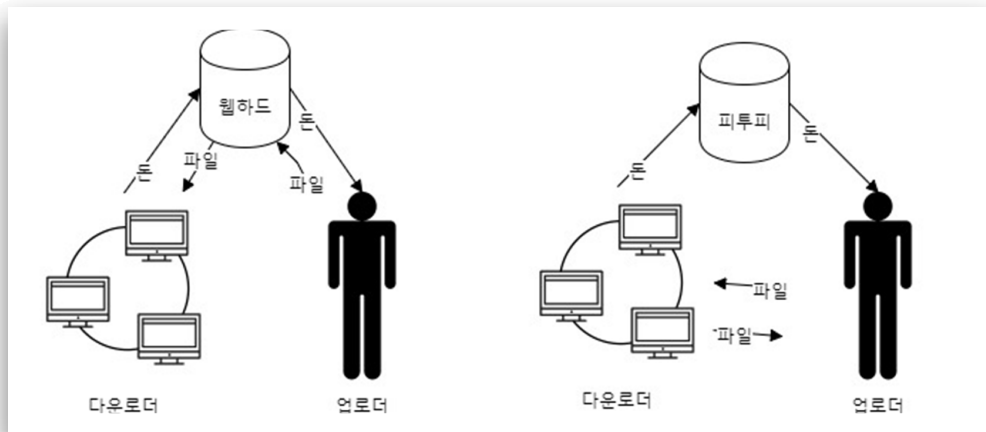
직접, 찰카다 카테고리의 일반인 물카들



26) 레벨 제도가 존재한다. 게시판의 게시 글을 많이 올리거나 추천을 많이 받게 되면 레벨이 오르며 레벨이 오르면 열람할 수 있는 게시 글이 많아진다.

이다. 웹하드 및 P2P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파일 공유를 위한 장소와 인터넷 화폐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7) 또한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유포행각을 방관하였을 때, 영리적 이윤을 얻는다는 전제하에 유포 가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8)29)



1. P2P

피투피는 1대1 거래에 가깝다. 서로의 컴퓨터 기능을 공유하여 파일을 주고받는데 P2P업자들은 연결 서버 혹은 중개자 역할을 한다. 토렌트는 메인 연결 서버가 없는 P2P 서비스이다. 업로더가 다운로더가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범죄가 발각이 되면 서로 패킷을 주고받던 다운로더와 업로더 모두 범죄자가 되어 처벌될 수 있다.

2. 웹하드

2000년경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일정 용량의 이동식 디스크의 대체 수단으로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였으나 이후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중개 비용을 받게 되면서 판이하게 다른 느낌을 띄게 되었다.

P2P사이트와 웹하드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 이외에도 음원,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문제로 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 되어 왔다. 2005년 저작권 법 개정을 이후로 음원, 프로그램 등의 상용 파일 업로드가 금지되었지만 사실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다. 2014³⁰⁾년 대원미디어가 웹하드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고소하였고, 웹하드 업체인 파일노리는 대법원까지 가며 상고했으나 2014년 10월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대원미디어가 최종 승소했다.

27) 「웹하드에 27만개를 올려 1억 6천만원을 쟁긴 이가 구속됐다」 **연합신문**, 2016년 06월 24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6/06/24/story_n_10649482.html

28) 「'불법 음란물 유포' 웹하드 운영자 적발」 **YTN**, 2015-07-26 09:03
http://www.ytn.co.kr/_ln/0103_201507260903124404

29) 「아동 음란물 수십만 건 유포...수억 쟁긴 일당 불잡혀」 **JTBC**, 입력 2015-09-01 08:3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5580&pDate=20150901

3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408141996239>

대원미디어, 천억대 저작권 소송 수혜<유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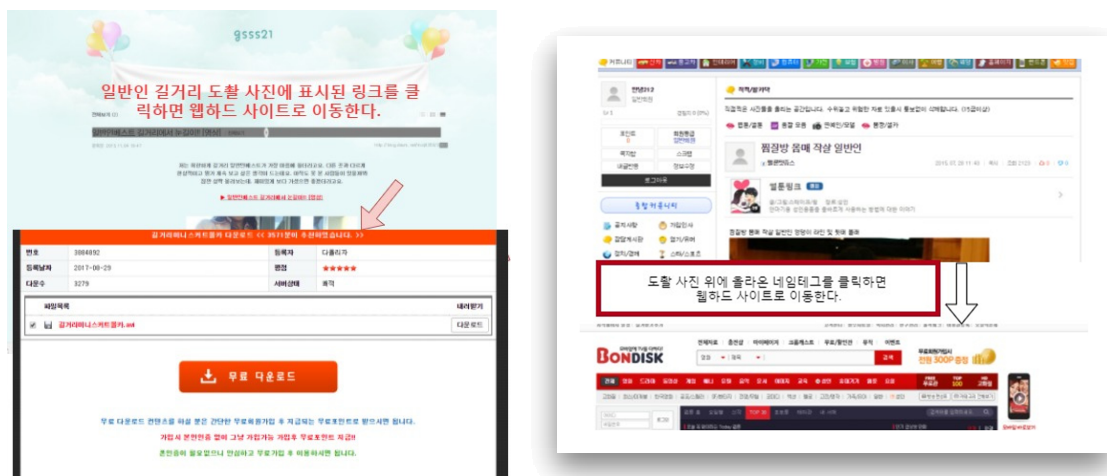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8_0013303077&cID=10810&pID=10800
 대원미디어,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에 승소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한국에서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P2P중개업체와 웹하드 업체는 모두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등록해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³¹⁾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필터링에 의해 발각된 데이터는 업로드 할 수 없게 되었다.³²⁾

디지털 성폭력 이미지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성폭력이 속수무책으로 올라오게 되는 주 원인이 되며, 이를 통해 얻는 업로더와 운영자의 영리적 이득은 수 천만원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말 밤 가장 빠른 속도로 업로드 되는 게시물들이 대체로 ‘국산 야동’ 카테고리의 게시 글들이다.

또한 게시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늘리기 위한 ‘추천인’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추천인 제도는 사용자의 계정과 연결된 링크를 걸어 그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면 홍보한 사용자가 다운로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다운로드 포인트를 받기 위해 여러 웹 사이트에 게시 글을 올리는데, 그때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몰래 촬영된 여성의 신체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사이트들에 확산 되어있으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러한 ‘도촬 사진 업로드’가 문화처럼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격권, 초상권 보호에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준다.



3.3.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경이다(트위터2011년 한국 정식 런칭, 텀블러 2009년 창업 2013년 한국 정식 런칭, 페이스북 2011년 정식 런칭). 이후 웹

31)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2.>

32)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조작하거나, 필터링 업체와 협약을 맺고 불법 유포를 하는 경우가 들어났다. 검찰, 웹하드 필터링업체 5곳 압수수색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150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드 및 디지털 성범죄 웹의 홍보는 소셜 네트워크로 이전해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1)유해 사이트 홍보

불법 웹 사이트들은 소셜 네트워크가 ‘해외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만들어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메인 계정을 만들어 심층 웹 페이지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공지하거나, 봇(bot) 계정을 만들어 키워드와 함께 링크가 게시되게 만든다. 봇은 실시간 이슈와 함께 유해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는데, ‘밤신’을 홍보할 때는 ‘밤의신 #성인 #인기웹툰 #성인웹툰 #대한민국 이혼보고서 - 내 아내는 대통령 1화 바로가기 -’ 이런식으로 검색어 순위에 높은 키워드나 여성, 성인을 암시하는 단어와 함께 올라간다. “**오피 《**건마》 **op ▷j***닷컴< **키스방 **오피 《**건마》 **op ▷jj****2닷컴< **키스방” 등과 같은 게시 글들은 로봇으로 게시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BOT 또한 도촬 사진을 이용하여 클릭을 늘리려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즉 구글에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도 유해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발견된다.



‘소라넷’등의 ‘불법 유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웹으로 대거 모여들었다. 이에 ‘여군지옥’(고고체리:여군을 성노예로 그려낸 만화)등의 가학적인 게시물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확산되었고, 2011년경 소라넷에서 활발하게 자행되던 ‘연예인 합성’, ‘지인능욕’ 등을 콘텐츠로 하는 계정들이 트위터에서 콘텐츠 생산 의뢰를 받거나 무료로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는 실제 국내에서 찍힌 성폭행, 강간, 소아성도착영상 판매도 존재한다. 거래는 주로 익명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진다.

(2) 연예인, 지인 ‘합성’, ‘얼싸’ 등

남성의 성기에서 정액이 나와 여성의 사진에 뿌리는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에 정액이 뿌려진 것처럼 합성하여 올리는 행위를 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포르노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 하거나 일명 ‘아해가오(성적으로 도취되어 맛이 간 여성으로 표현하며 비하, 폄하된 표정을 이르는 말)’로 합성하여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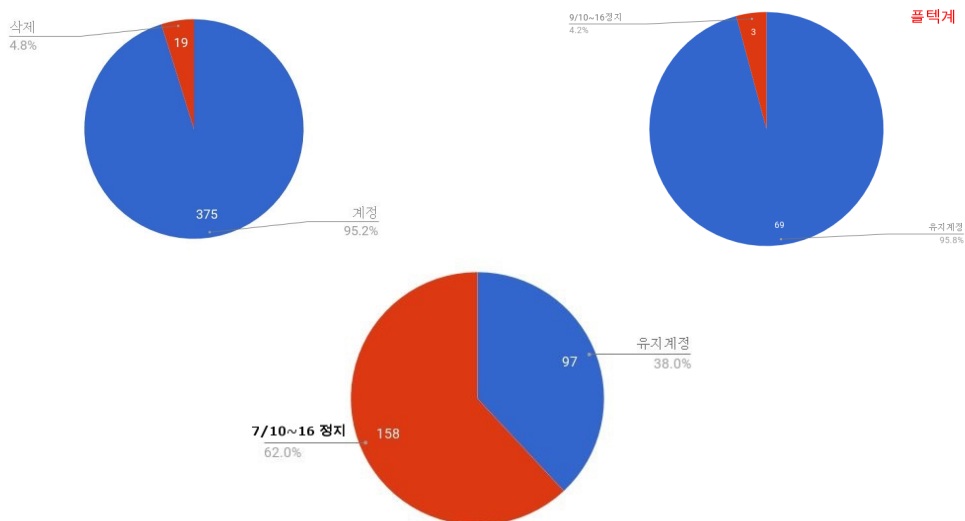
이런 문화에 노출된 성인과 청소년들은 올바른 여성관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폐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단체 메신저방(이하 단톡방)등의 음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단톡방’으로 이동하는 중간 경로로 트위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를 모의하는 과정은 트위터라는 공개적인 플랫폼에 그대로 전시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성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남길 목적으로 올리는 일상 사진을 가해자들이 도용하여 트위터 내에서 강간서사로 디지털 성폭행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주소,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SNS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가해 행위도 서슴지 않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는 디지털 성폭력이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며, 실제로 연락을 받아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되고 있지만 트위터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무하다.³³⁾

트위터 신고 및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SNS성범죄박멸팀 통계자료]

33) 트위터 보고서 전선미

첫 번째 자료는 7월 4일~8일 정지 현황으로, 범죄를 일으킨 계정의 삭제 또는 정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4.8%의 미미한 삭제율을 보인다.

DSO의 해시태그(#디지털_성범죄_아웃) 운동을 기점으로 7월10일~16일 62%까지 삭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뒤로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4.2%의 삭제율을 보이며 삭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2017년 8월 18일 오전 3시경 성범죄 계정들의 정지율은 급감 상태이다.

허가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텍트 계정(플텍계)’의 경우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 신고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플텍계에 관한 별도의 신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텀블러

트위터와 흡사한 플랫폼이다.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달리 한국에 지사가 없다. 주로 아동, 청소년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영상은 비밀번호로 잠글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로 직결되는 방식으로 유포되는데, 유포자가 제시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영상이 재생된다.

3.3.5 아프리카 티브이, 유튜브, 트위치 등 방송 및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성인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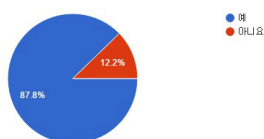
여타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불법적으로 녹취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아동에게 ‘채팅 아이디를 알려줘라’, ‘벗어야지 방송이 잘 된다’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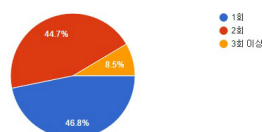
3.3.6 유해 사이트(도박, 약물,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등의 업로드)

주로 디지털 성범죄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는 검색 가능 영역과 검색 불가의 영역으로 나뉜다. 접속에 필요한 클릭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검색 불가의 영역으로 본다.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가 (응답 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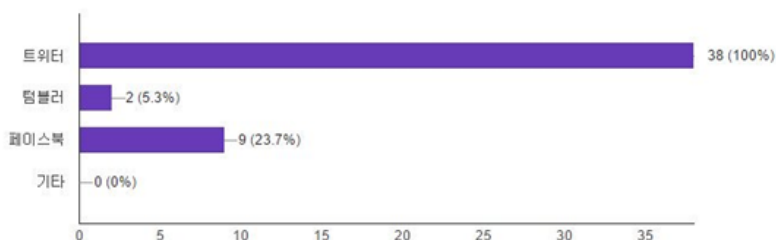
접속에 필요한 클릭 수 (응답 47개)



<http://cafe.daum.net/Rp>

<http://cafe.daum.net/Rp>

사이트 URL 게시 장소 (응답 38개)



(1) 검색 가능 영역

표면 웹에 올라온 게시 글은 주로 해외사이트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그대로 전시되기도 한다.

(2) 검색 불가 영역

‘밍키넷, 소라넷과 같은 해외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는 위의 모든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골고루 가지고 그것으로 판매수익을 올린다. 또 국내의 범망을 피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라는 점을 이용해 타 사이트에 비해 범죄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게시된다.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베스트 게시물을 확인 했을 때, 베스트 게시물은 대개 “강간, 미성년, 근친”등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담고 있다. 판매자는 자극적인 정보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실제 성폭행 영상을 올리고, 실제 아동 청소년 영상이 아니어도 “어린 보지 따먹기(어린 여성 성폭행하기)” 등의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자극적인 제목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가속화 된다. 각 사이트들의(20여개의 사이트) 많은 추천을 받은 베스트 게시물 30개 가량을 확인 했을 때, 아동, 성폭행 코드를 담고 있는 영상은 실제 “아동, 청소년” “강간, 성폭행 상황” 영상등으로 추정된다. 2016년 5월 50개의 사이트를 직접 모니터링 한 결과 영상 게시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47개중 100%의 사이트가 타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유출 성폭행을 유출하고 있으며 97%가 실제 화장실 혹은 모텔 등에서 도촬 된 영상을 유출, 83%가 실제 아동 청소년 영상을 유출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78.7%가 실제 성폭행 강간 영상물이었는데, 그것들은 연출이 아닌 실제 아동 성폭행 (혹은 유출 성폭행) 영상으로 추정되며, 다른 게시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회수를 가진다. 또 이벤트 양식으로 취중 여성을 강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중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들은 이러한 성범죄 영상물들을 여러 커뮤니티와 사이트로 확산시키며 디지털 성범죄영상, 카지노 홍보, 성매매 알선, 불법약물 판매, 웹하드 P2P사이트 등의 링크를 기재하여 판매 중개비를 취득한다.’³⁴⁾

3.3.7 다크웹

다크 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이용자의 정보를 알기 힘들며 서로 연결된 웹사이트들이다. 이들은 구글,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등의 일반적인 브라우저로는 접속 할 수 없다. 한국에는 이러한 다크웹을 딥웹과 혼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크웹’은 현재 아동 디지털 성폭력의 주 발생지가 되고 있으며, 해당 웹에 접근하는 이유도 아동 성범죄 영상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글 트렌드 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2~2017까지 딥웹의 검색율은, 인기가수 ‘아이유의 검색율을 100%으로 상정했을 때 6.25% 정도의 검색율이며, 이는 웹하드랑 비교했을 때는 44.18%의 검색율이다.

딥웹의 관련 검색어는 1위 ‘로리’, 2위 ‘딥웹로리’, 3위 ‘딥웹 주소’이며, 2016년도 9월 28일부터 2017년 08월 27일 딥웹의 관련 검색어³⁵⁾는 1위 ‘딥웹 주소’(100), 2위 ‘딥웹 로

34) 국회토론회

35) 구글 트렌드 이용

이 검색어를 검색한 사용자가 다음 검색어도 검색했습니다. 정렬하려면 측정항목 '

* Top -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를 사용하세요. 점수는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100은 가장 검색 빈도가 높은 검색어, 50은 검색 빈도가 절반 정도인 검색어, 0은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대비 검색률이 1% 미만인 검색어입니다.

리'(85), 3위 '로리'(85), 4위 '딥웹 로리 주소'(55), 5위 '딥웹 사이트'(45), 6위 '히든위키'(30)/'딥웹 로리 주소2016'(30), '딥웹 후기'(20), '딥웹 하드 캔디', (15) 'DEEP WEB'이다.

2016년 기준 딥웹 검색을 했던 사람들 중 약 20프로 정도가 '딥웹 로리를' 검색했다. (평균 2/10 비율)

아동·청소년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 실태 및 피해 사례

권주리 사무국장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 실태 및 피해 사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주리

www.10up.or.kr
10up@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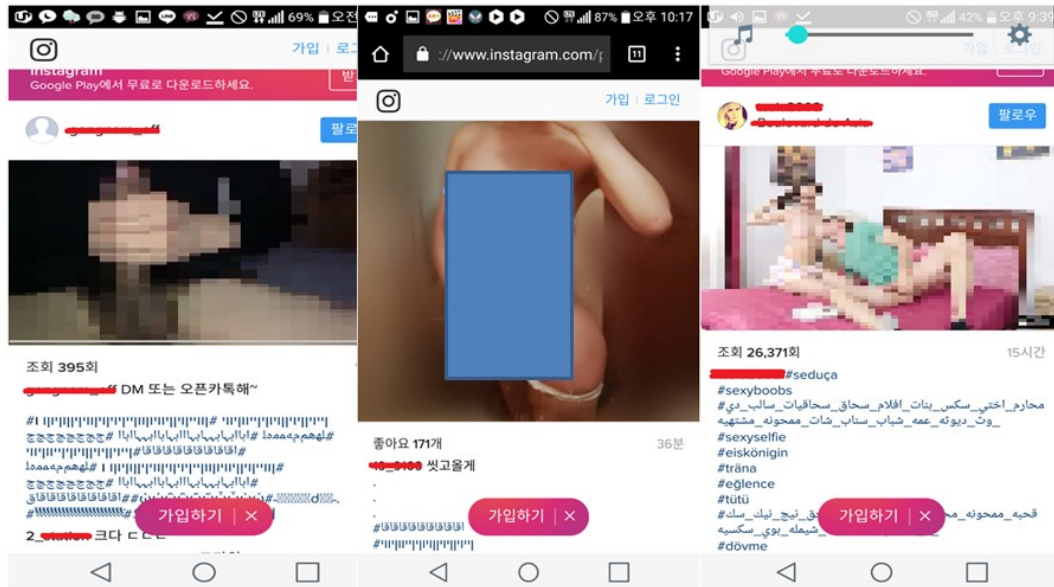
1. SNS를 통한 시각적 성폭력

- 인★그램을 중심으로 본 SNS의 실태

본 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임. 그러나 최근 상담 요청 사례가 SNS를 통한 개인 메시지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트*터, 페*스북, 인★그램의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됨. 그 중, 인★그램의 경우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음란물들을 확인하게 되어 집중 모니터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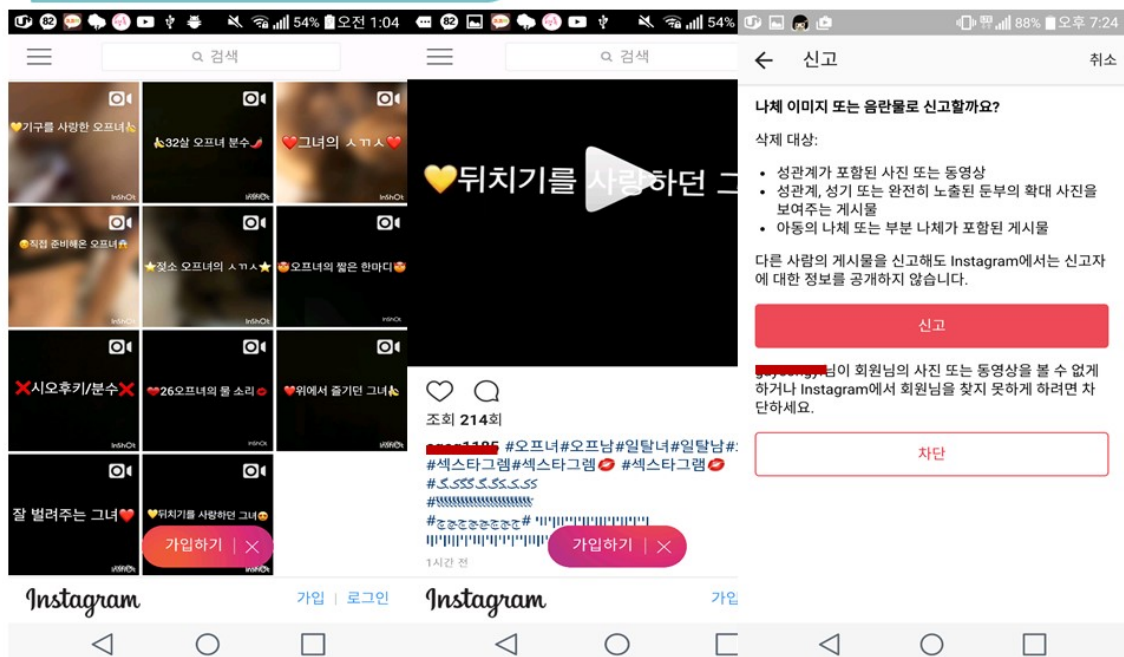
SNS의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성관계 동영상 및 노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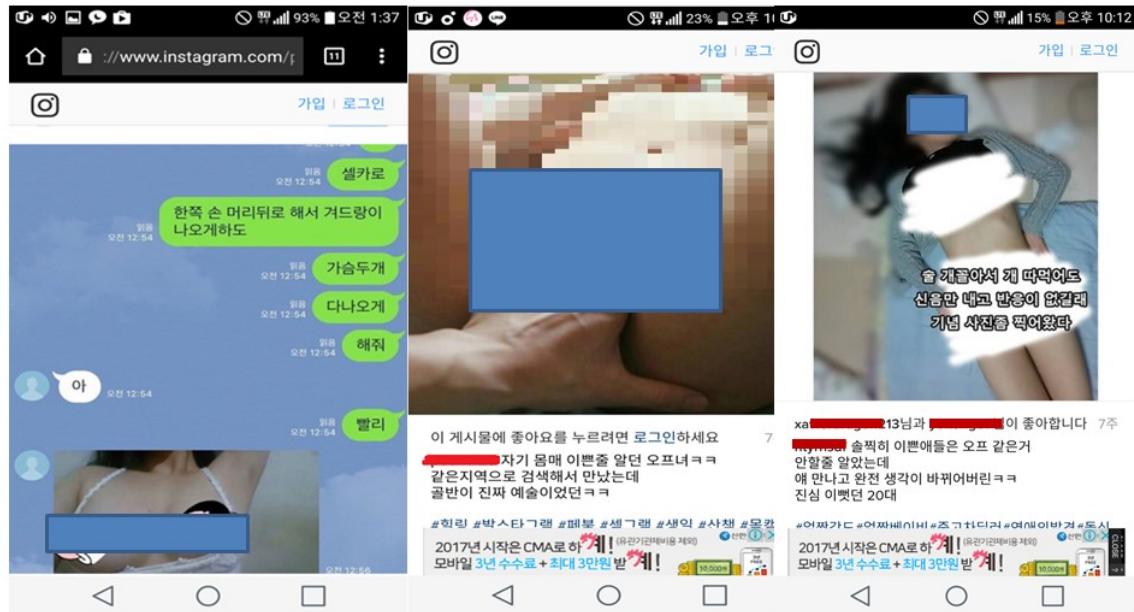
SNS의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성관계, 자위, 신음 등 음성파일



SNS의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 품평 및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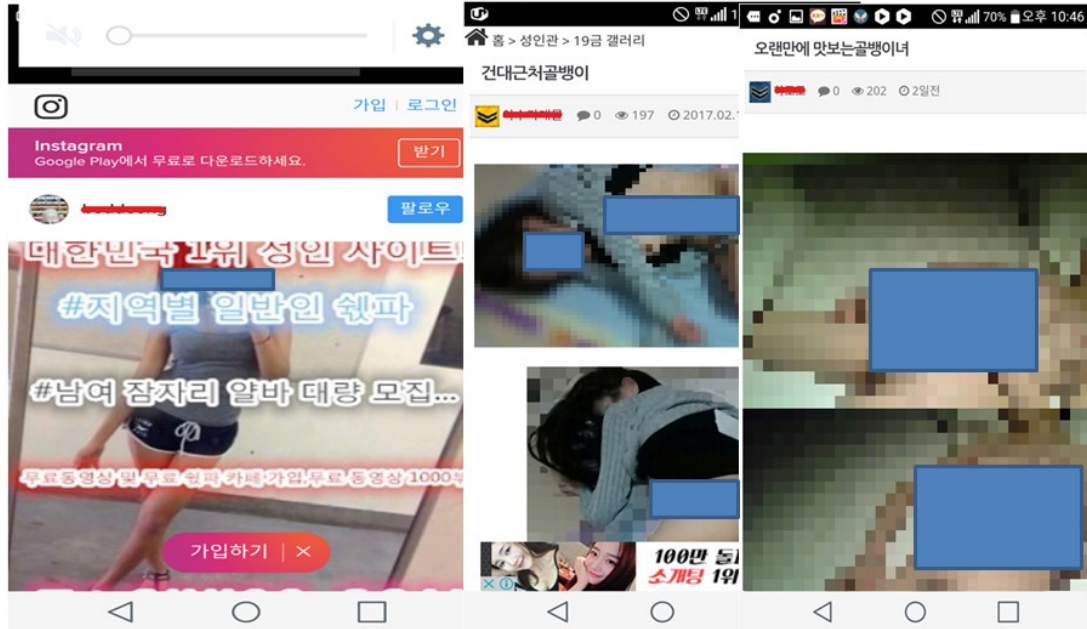
SNS의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



SNS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프로필을 통해 유흥사이트로 이동



SNS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DM을 통한 성매매 제안



SNS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문제점

-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섹스타그램' 류의 해시태그와 필터링 되지 않는 부호 등을 바꿔가며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음란물(성관계 영상, 신체 노출 사진, 자위 영상, 음성 등)과 성매매 암시 내용을 게시함.
- 그러나 음란물들이 언급한 해시태그와 무관한 내용들(#얼짱, 힐링, 생일, 전복 등)을 함께 해시태그도 함께 기재하여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음란물과 성매매 암시 내용에 함께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음.
- 영상/사진은 여성의 몸 위주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사진의 당사자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시물의 촬영 동의 여부, 게시 여부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범죄 동영상(몰카)의 가능성도 있음.
- 영상/사진은 23시~ 익일 2시까지 업로드와 삭제가 반복되는데, 신고규정(성관계가 포함된 사진/동영상, 성관계, 성기 또는 둔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 아동의 나체 또는 부분 나체)이 있어 상대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해당 계정이 삭제당하기도 하는데, 음성(성관계, 자위, 신음 등)의 경우 게시 빈도가 높아짐.

SNS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문제점

-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것으로, 검색 역시 가능하고 해시태그를 파도타기 방식으로 이용하여 음란 게시물을 보는 것이 가능함.
- 게시자의 프로필 페이지는 성매매 업소, 개인 만남을 위한 대화를 위한 다른 매개의 아이디 안내 혹은 유흥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직접 업소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음(주로 여성의 노출된 신체에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식)
- 음란물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의 게시물에 DM을 보냈다는 댓글도 많아 개인적인 제안(성매매, 조건만남, 스폰)도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SNS에 게시된 채팅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보고 청소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성범죄(성매매,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SNS 실태 (인★그램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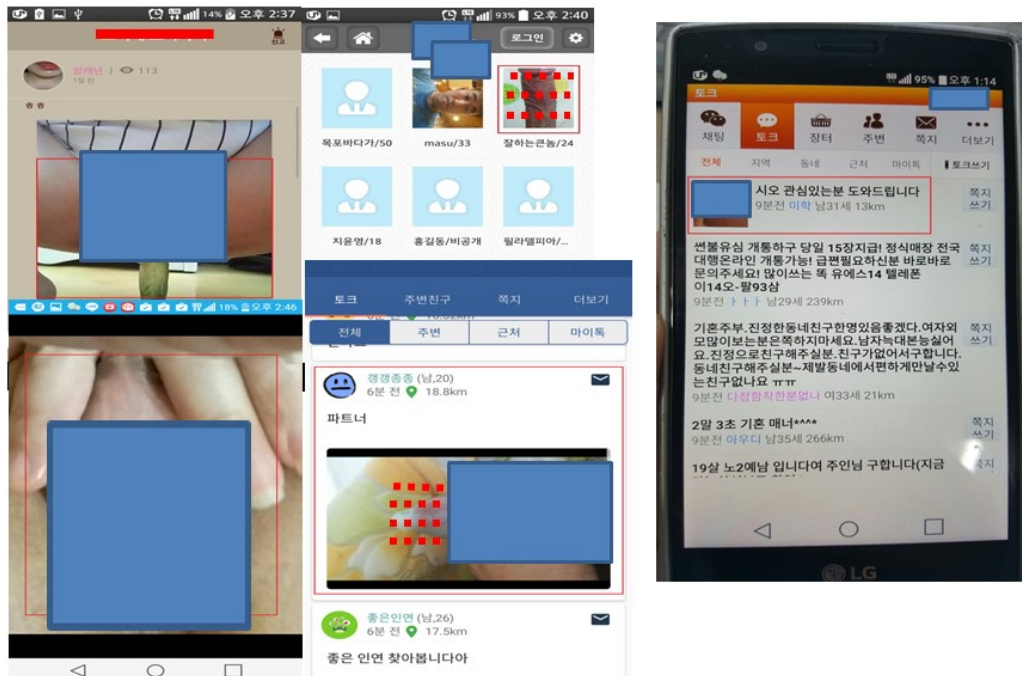
결론

- SNS가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실태는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보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키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시각적 성폭력임.
- 음란물(영상/사진/음성)에 계속 노출되면 이러한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일상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게 되는 것임.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 환경은 일상화 되며 확장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환경 자체가 시각적인 성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2.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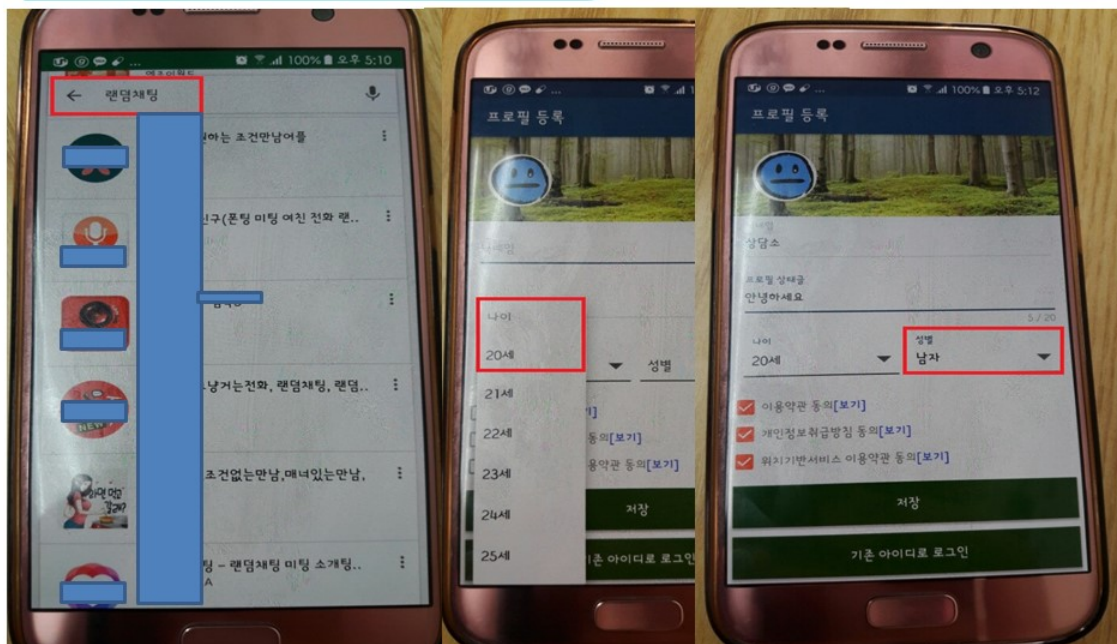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가입하면 노출되는 화면 - 신체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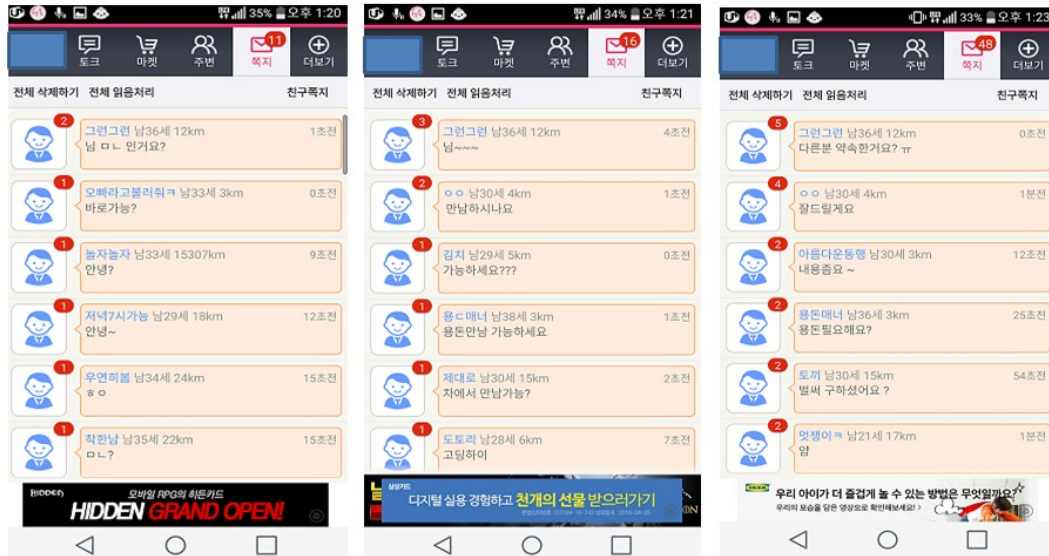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가입 과정 - 성별/나이 설정 후 완료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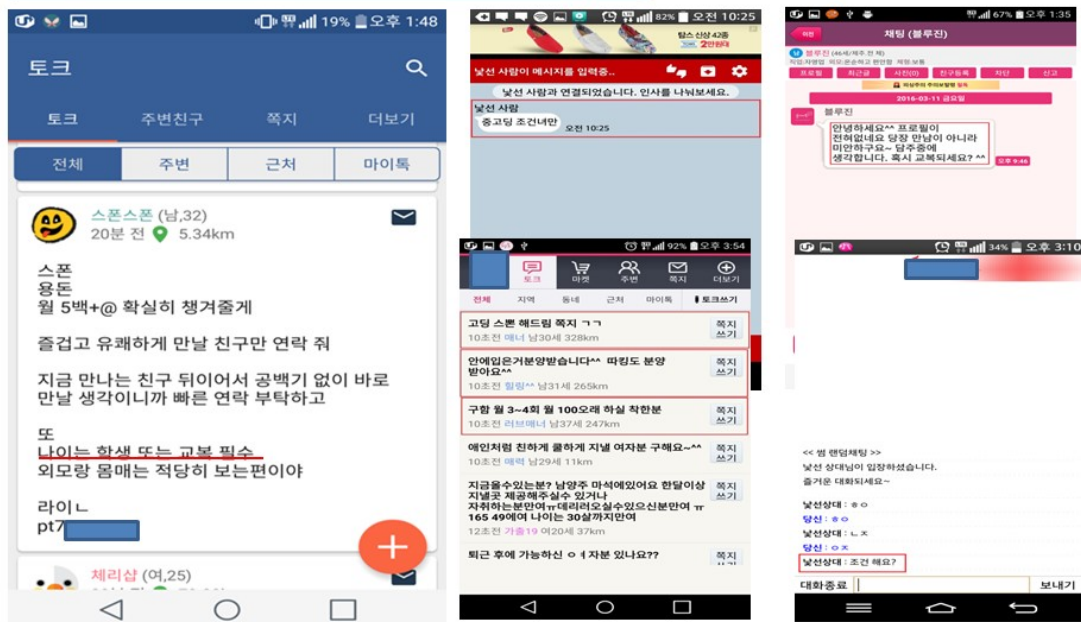
청소년으로 가입시 - 쏟아지는 성매수 제안



- 가입이 완료된 후, 2분 동안 받은 쪽지 48개
- 대부분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 모니, 만남 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제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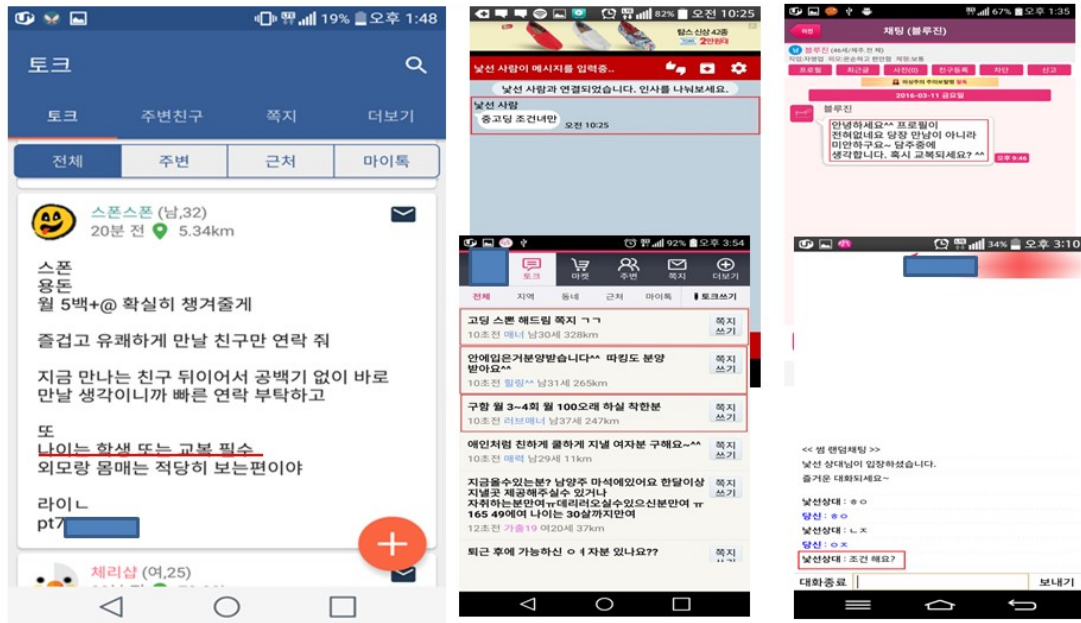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청소년 성매수를 희망한다는 게시글이 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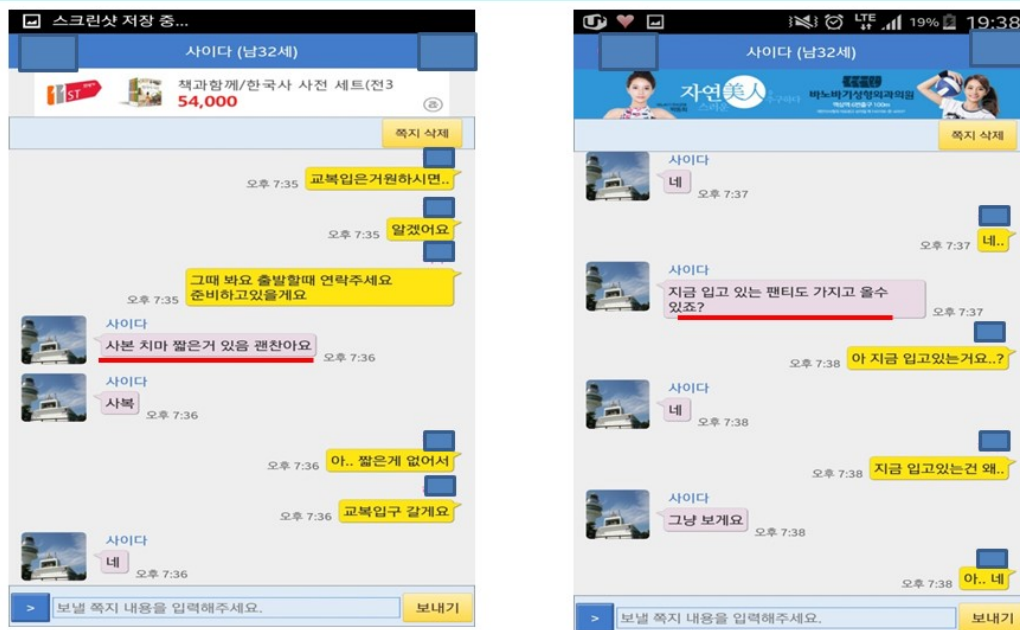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청소년 성매수를 희망한다는 게시글이 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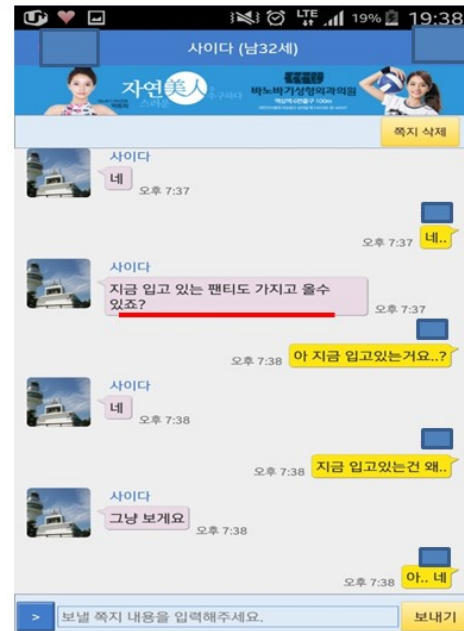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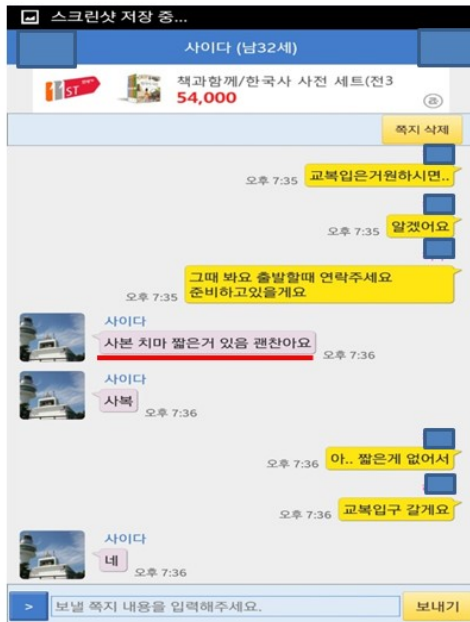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후, 신상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성관계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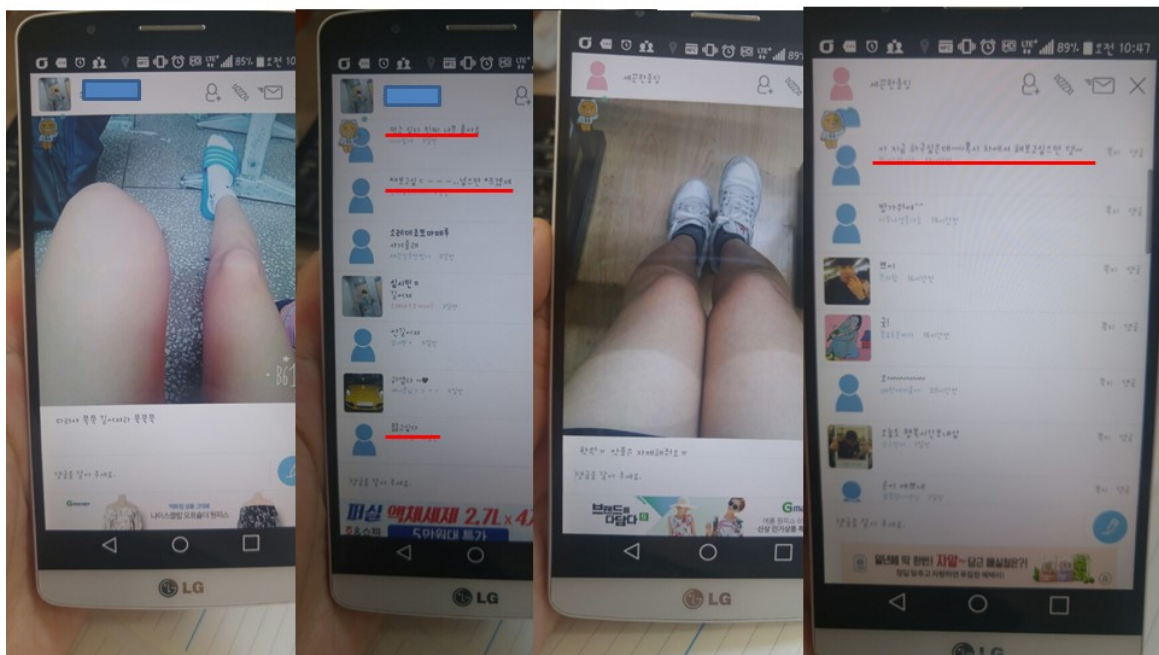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후, 신상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성관계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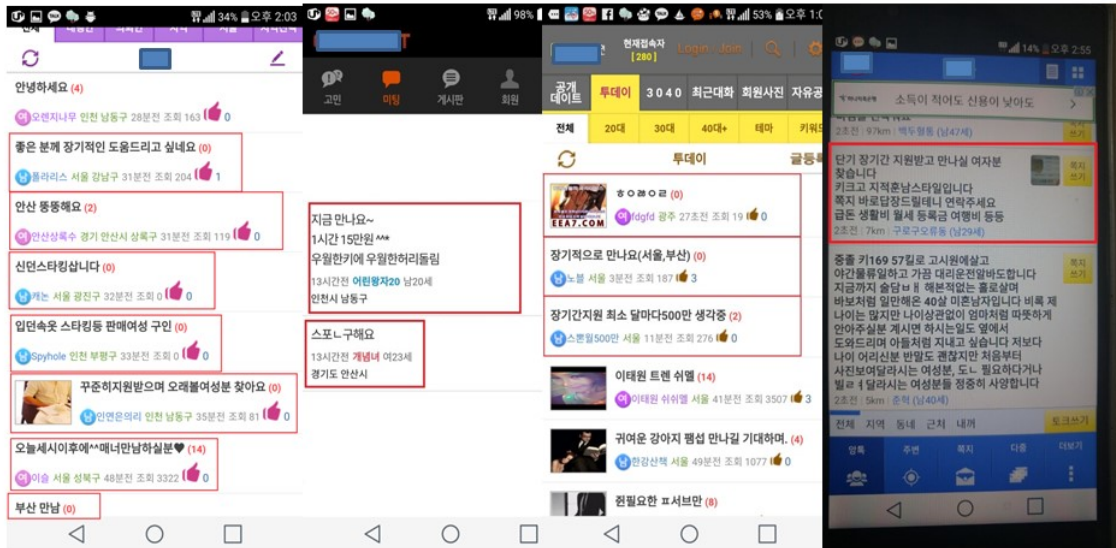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청소년 게시물에 성희롱, 성매수 제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성매매 관련 게시물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채팅 어플리케이션 특징

- 이용 가능 연령을 20세부터 선택할 수 있게 보여지나, 성인인증 절차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여 익명성이 보장됨.
 - 성별 역시 선택시, 본인 확인을 하기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가 불분명함.
 - 미성년자의 경우, 20세 이하의 나이 선택이 불가하므로 닉네임을 나이로 기재하기도 함. ex) 열여덟(여, 21)
- 대화의 휘발성
 - 어플 내 채팅 기능은 저장 및 캡처 불가
 - 대화 도중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갈 경우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문제점

- 가입하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이미지: 음란물(성기 노출을 포함한 신체 노출 이미지)과 성매수 조건들이 목록에서 노출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용자가 음란 게시물을 선별할 수 없음.
- 성인인증이 없어 음란물에 노출이 되고 있지만 청소년도 채팅 어플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함.
- 성매수자들의 악용: 성인인증이 없고 대화의 휘발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매수 범죄에 이용하고 있음.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문제점

-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아동청소년도 있지만 본 센터에서 만난 사례의 대부분은 알선자가 아동청소년인척 하여 성매수자와의 만남을 약속 후, 진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현장에 내보내어 이익을 취함.
- 성매수를 전제로 만나기로 하면, 성매수자는 아동청소년과의 만남 성사를 위해 위협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만남 성사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성폭력, 금품 갈취, 폭력 등을 경험하기도 함.
- 성매수를 전제로 하는 만남이 아닌 경우에도 만나서 성매수를 제안하여 성매매 피해를 경험하거나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함.
-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진/영상 유포,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2차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을 찾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지 못함.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결론

- 실효성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필요성: 영국은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가 grooming을 신종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CEOP에서 사이버환경을 모니터링하다 살색이 60%이상인 이미지가 확인되면 주소를 파악 후, 해당 지역의 경찰에게 그 집을 수색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검거할 수 있음. 즉,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 발생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법임.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grooming)를 신고하면 70~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미 성매수 범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본인 혹은 가족이 신청해야 지급이 됨.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결론

- 현행법 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재할 법이 없음.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사이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처벌법 제정이 필요함.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6년도부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업자로 고소,고발하였으며, 현재 어플리케이션 규제 관련 법령을 아동법 개정안으로 정춘숙 의원실과 발의준비중임.
-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범죄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소 등의 설치와 이와 관련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3. 피해 사례

사례 1. 성매매 시 동영상 촬영 및 스마트폰 메신저로 해당 동영상 공유

사례 2. 개인 SNS의 게시 사진이 유흥사이트의 특정 게시판(은꼴)에 게시/공유

사례 3.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회 성매매 후, 동영상 촬영되어 유포 및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지속적 성관계 요구

사례 4. 아동청소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사례 4. 아동청소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안녕하세요 19살 000입니다.

제가 왜 어플리케이션을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전 17살때 처음으로 *특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친구들의 권유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이사온지 1년이 좀넘은 시기라서 아직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때 이름만알던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다니면서 고등학생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않아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용돈도 부족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쉽고 많이 벌수있겠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특이라는 어플을 알려주었고 저는 집에가서 *특을 깔아봤습니다.

사례 4. 아동청소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다깔고 나선 프로필을 작성해야하는것인데 나이는 20살부터였습니다. 제 나이는 없어서 20살로 등록을 했고 처음하는거라 토크방으로 가 사람들이 하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지켜보다가 전 혼자해볼수 있을꺼같아 한 남성에게온 쪽지를받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남성이 저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17살이라고 하였고 그남자는 잠시 쪽지가 없다가 다시 자연스레 대화를 했습니다. 키. 몸무게. 페이. 가능한것과 안되는것을 물어보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어떤여자가 토크에 올린걸 보고 똑같이 했습니다. 나이는17살 키는160 몸무게46 페이는 한번에10만원 안되는것은 후장.얼싸.질싸 안된다고 쪽지를 했더니 사진을 보여달라해서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남자가 어디서 만날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00동 00은행앞으로 와달라했습니다. 출발할때 쪽지를 준다고 10분뒤 쪽지가 왔습니다.

사례 4. 아동청소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20분뒤 약속장소에서 그남자 차를타고 간단히 얘기하다 그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떨리기도했으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그남자집에 도착을했고 그남자는 씻고나오라길래 씻고난후 그남자와 침대에 같이누워서 얘기좀하다가 키스로 시작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남자는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저는 그남자 차를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낼려했습니다. 아무리 용돈이 급하다고하지만 무모한짓이었고 아직 17살이었던 저에겐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고있어도 이미 저는 다시 어플을 통해 2번째 조건만남을 구하였고 저는 끝지를 못해 한달에 2~3정도 했습니다. 이 어플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위험 유혹적인지 다알고 있을겁니다. 제발 저는 어플에 대한 법이 생겼으며 좋겠고 더이상은 조건만남으로 인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을 보기싫습니다.

* 본 글은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이 작성한 글을 동의 하에 수정없이 게재했습니다.

4. 결론

- 누구나 일상적으로 소통의 매개로 사용하는 SNS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성범죄(시각적 성폭력, 성매수 유인/알선)에 노출되고, 성범죄 피해(시각적 성폭력, 성매수 범죄)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매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이용되는 사이버 성범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꿈 꾸는대로 말 하는대로
행동 하는대로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GL)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김현아³⁶⁾

I. 현행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입법화되었다. 그 이후 이 법률이 1998.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입법화되었고, 이전에는 처벌법규가 없어 무혐의 처분되거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었던 행위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음란물유포죄³⁷⁾로 처벌되거나, 정통망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³⁸⁾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 분류에 따르면 중분류 강력범죄(흉악), 소분류 성폭력, 세분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죄를 분류하고 있다.³⁹⁾ 경찰청은 ‘성폭속 범죄의 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죄, 정통망법 음란물유포의죄를 분류하고 있다.⁴⁰⁾ 또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 배포,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⁴¹⁾

36) 범부법인 GL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SD 젠더법 박사, 본 발표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부분은 김현아(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수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용 페이지는 각 주에서 밝히고 있다.

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자

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9) 대검찰청, 「범죄통계」 분류 방식이다

40)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분류방식이다.

4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그리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⁴²⁾에서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II.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실태

1. 범죄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 비율은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력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24.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2006년 1.4%에서 2015년 3.7%로, 10여년동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⁴³⁾

(단위 : 건,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3)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14-15면 참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카메라등 이용촬영	517 (3.6)	564 (3.9)	585 (3.6)	834 (4.8)	1,153 (5.6)	1,565 (7.1)	2,462 (10.5)	4,903 (16.9)	6,735 (24.1)	7,730 (24.9)
통신매체 이용음란	195 (1.4)	240 (1.7)	378 (2.3)	761 (4.4)	1,031 (5.0)	911 (4.1)	917 (4.0)	1,416 (4.9)	1,254 (4.1)	1,139 (3.7)
강간	2,510 (17.6)	2,659(1 8.5)	3,621 (22.5)	3,923 (22.6)	4,383 (21.3)	4,425 (20.2)	4,349 (18.6)	5,359 (18.4)	5,092 (17.1)	5,274 (17.0)
강제추행	4,984 (34.9)	5,348 (37.3)	6,080 (37.7)	6,178 (35.6)	7,314 (35.5)	8,535 (38.5)	10,949 (46.9)	13,236 (45.5)	12,849 (42.2)	13,266 (42.7)

그런데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2015년도 검거는 7,430건으로 검거율이 97.6%이지만 기소율은 31.2%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1.2%로 3년간 기소율이 2010년(72.6%)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다.⁴⁴⁾

이처럼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되거나 불기소처분되고 있으며, 신상정보공개제도라는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합의시도는 대부분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거나 불기소되기 때문이니까요”

“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학생인 경우, 어린 경우 조건부기소유예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관계이고, 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 몰카도 성폭력 범죄라서 신상정보공개가 20년 동안 등록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도 사진 촬영 한 번으로 남자 인생을 망치나 싶어서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⁴⁵⁾

“ 법원의 판단에서 무죄 논란이 있었던 신체부위나 전신 촬영 같은 사진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 국선으로 지정되었다고 진술 참여하러 가는 길에 불기소 처분으로 지정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⁴⁶⁾

2. 판결 현황⁴⁷⁾

44) 조소연(2017),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VOL 11. 28면.

45) 김현아(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1면 참조.

46) 김현아(2016), 위의 논문, 67면 주121 참조.

47)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온라인 성

(1) 피해자의 특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성별 분석 결과, 99%가 여성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⁴⁸⁾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불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33.76%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이 3.69%, 19세 이상 20세 미만이 2.31%,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6.44%,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59%, 50세 이상이 0.44%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이는 10.99%,⁴⁹⁾ 모르는 사이는 89.01%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발생장소가 지하철과 노상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통계 결과이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피해자의 성별을 분석해보면, 여자가 91.44%, 남자가 2.25%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이에서 31.08%, 모르는 사이에서 68.92%로 나타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도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화번호가 일반에게 알려진 다산콜센터,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문자를 전송하는 사례,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영상을 전송하는 사례, 인터넷블로그 등에 음란한 글을 게시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2) 피해장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판결문상 나타난 피고인의 수를 기준으로 지하철⁵⁰⁾ 54.73%, 노상 10.80%, 버스·택시 안 4.64%, 집·숙소 3.29%, 공중화장실⁵¹⁾ 2.81%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범행발생지와 피해발생지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음란한 영상, 문자 등의 송신장소인 범행발생지와 그 영상, 문자 등의 수신장소인 피해발생지가 동일하지 않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그 범죄수단으로 하고, 범행발생지와 피해발생지가 동일한 장소가 아니며,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

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9. 26, 이 장에서의 판결의 통계부분은 저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발간한 위 심포지엄 자료집(미간행)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을 관찰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2011. 1. 1.부터 2016. 4. 30.까지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1심 1,540건, 항소심 278건, 상고심 48건 총 1,86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1.부터 2016. 5.까지 선고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 296건 중 278건(1심 222건, 항소심 53건, 상고심 3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48) 분석대상 판결 중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19건이었는데, 이 중 남성만이 피해자인 경우는 11건으로 대부분 남자화장실이나 남자탈의실에서 발생하였다. 남녀 모두 피해자인 경우는 8건으로 주로 모텔 등에서 남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었다.

4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아는 사이>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인 43.68%, 직장동료 19.54%, 인터넷¹⁾ 6.32%, 친구 3.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26.44%에는 학원장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고생을 촬영한 사안,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촬영한 사안, 사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고객을 몰래 촬영한 사안, 호스트바 종업원이 손님을 촬영한 사안,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촬영한 사안, 지인의 처를 촬영한 사안 등이 있었다.

50) ‘지하철’에는 차량내부, 지하철역사,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역사 출구를 포함한 통계이다.

51) ‘공중화장실’은 지하철, 공원, 상가 등의 공중화장실을 의미한다.

고 이루어지는 비대면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역과 상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발생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 숙소 등이 51%, 직장 이 7% 순으로 나타났다.

(3) 범행횟수

가해자 1인이 범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횟수를 살펴보면, 1회 46.17%, 2회 11.69%, 3회 5.84%, 4회 5.06%, 5회 이상이 31.23% 순이었고, 2회 이상 촬영한 경우는 53.83%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의 범행 481건 중 10회 이상 촬영한 경우는 254건에 이르고, 100회 이상 촬영한 경우는 37건에 달하였다.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1,278회 범행을 저지른 사례, 피해자 696명을 대상으로 696회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행횟수를 살펴보면, 1회 51.80%, 2회 12.61%, 3회 7.21%, 4회 4.05%, 5회 이상이 22.88% 순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경우는 48.20%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의 범행을 한 사건 중 최대 108회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4) 처벌 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심 양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 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만 원 26.60%, 300만 원 22.00%, 100만 원 15.06%, 150만 원 12.5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79.97%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심의 경우 벌금형이 63.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 16.22%, 선고유예 6.76%, 징역형 5.86% 순으로 나타났다. 1심 형벌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벌금형 64.41%, 집행유예 16.22%, 선고유예 6.76%, 징역형 5.86%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촬영자가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까지 한 경우의 처벌이 어떠한 지 살펴보면, 분석대상 판결인 촬영물이 유포된 66건 중 1심에서 선고유예된 사건은 5건 (7.35%),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19건(28.79%),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24건(36.36%),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18건(27.27%)이었다. 또한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고형인 벌금형이 선고된 19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10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9건이었고, 전체 벌금형 중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2.63%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78.95%이 다. 따라서 결국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로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심에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의 양형은 가장 많은 비율이 200만원 이하로 39.4%이고, 300만원 이하가 24.2%, 다음이 1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에서 각 16.7%가 선고되어, 이 경우도 결국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로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그 피해의 심각성, 피해 확산의 신속성,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단순 촬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포된 경우에도 미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⁵²⁾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대부분 처벌을 받고 벌금형 액수도 낮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결국 피해자가 한 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어차피 합의하건 안하건 벌금이 많아야 300만원으로 낮게 나오니까 가해자가 굳이 합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아는 사이이면 합의를 하지만, 지하철킨 같은 경우는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합의를 안 합니다. 벌금이 200~300으로 예상되니까요"

"벌금이 낮으니 피고인이 합의 노력도 안하고, 피해자로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니 결국 피해자가 한 푼도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가 수사상황을 봐서 처벌이 경미할 거 같으면 합의를 안합니다"⁵³⁾

III. 현행 성폭력처벌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⁵⁴⁾

가. 성적 수치심의 삭제 필요성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성적 수치심’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 법률상 성적수치심이라는 규정이 포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령	표제	조문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 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52) 유포부분 분석은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28-130면 참조

53)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41면 국선번호사 인터뷰 참조.

54)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등에 관한 특별법	용촬영)	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u>수치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u>성적 수치심</u>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4. 아동에게 <u>성적수치심</u> 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이처럼 수치심과 연결되는 성폭력은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조항이 과거에 형법의 ‘정조의 죄’ 장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여전히 순결과 정조의 문제로 여겨지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성폭력’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위험성이 있다.

독일은 수치심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 질문에 답변할 때에 수치심을 느끼는 문제를 지적할 때에 사용될 뿐, 수치심을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의 보호대상으로 논의하는 내용은 없다.⁵⁵⁾

또한 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와 관련한 법원 해석에 따라 법원은 특히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지는 부위인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부각하여 찍은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언론은 ‘전신 무죄, 엉덩이 유죄’라는 제명하에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이런 무죄 판결은 앞으로 하급심뿐 아니라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의 피해자 감수성 부족에 대한 논란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피해감정으로 대변되는 성적 ‘수치심’의 표현을 성중립적인 언어로 개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아닌 가해자의 행위중심의 구성요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고,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성폭력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⁵⁶⁾

나. 유포행위의 처벌 강화의 필요성

(1) 촬영물 유포 피해 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 형태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촬영자가 단순히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와 별도로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경우는 인터넷의

55) 장다혜(2014), “형법적 관점에서 본 성적 수치심”,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2014기획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37-38면.

56)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같은 의견으로 전윤경(2016), 위의 글, 140면, “구성요건을 개정한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라고 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성폭력 발생 후 주위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다시 한 번 고통을 당하는 2차 피해를 호소해 왔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은 촬영물이 유포되고 재유포된 경우,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까지 두려워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된 여성 피해자는 대인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직 유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미 자신도 모르게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앞으로 언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피해 감정속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결국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넘어 오프라인에서의 실생활까지도 위축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⁵⁷⁾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일 커요. 동영상 유포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등 2차 피해를 입었고, 혹시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나와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제 집도 알고 직장도 알고 해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요, 지금 직장도 그만 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 접근금지나 그런 게 강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사람이 나중에 협박할 생각인지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그 동영상을 누구한테 전달했으면 어떡해요.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저장했으면... 저 이름하고 주민번호 바꾸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올렸거나 다른데 기록을 남겨 두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그걸 올리면 어떡해요?”

“(가해자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된다, 하느님께 기도한다.”

특히 (구)연인 사이에서는 속칭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⁵⁸⁾라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구)연인 사이에서 촬영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를 받은 후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다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나 새로운 남자친구, 가족 등 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⁵⁹⁾

57)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위 자료집, 67-68면 참조.

58) 다만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리벤지’라는 표현에서 무엇인가 여성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응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포르노’라는 표현에서는 음란물과 혼재되어 여성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음란물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게 한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가 적합한 용어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대해 2015년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해서 단체의 명칭을 RPO(Revenge Porno Out)에서 DSO(Digital Sexual crime Out)로 바꾸어 활동하는 단체는 리벤지 포르노도, 음란물도, 포르노도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디지털 성범죄를 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시청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하예나(2017),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VOL 11. 7면.

59) 아래의 사례들은 김현아(2016), 위의 논문에 소개된 판례들이다.

피해자(여)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였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되었다(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10,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2015노1342).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가 드러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그 후 이 촬영물은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동영상 마지막에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게시하여 누구나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여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714)

피고인은 피해자(여)의 자택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유에스비와 쪽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피해자의 배우자가 볼 수 있도록 반포하고, 인쇄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거주지와 아이들 학교에 반포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695)

일본에서도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성적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에 발생한 ‘미타카(三鷹) 스토키 살인사건’에서는 범인이 결별한 교제상대인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에 두어 동영상이 확산되는 등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되었고, 2014년 11월 19일 ‘리벤지포르노규제법’이 제정되었다.⁶⁰⁾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범죄 후 합의를 중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⁶¹⁾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 몸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동영상 유포를 걱정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재판과정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대출원리금에만 합의하였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몰수하고, 폭행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유포된 촬영물 삭제의 어려움과 비용문제

60) 김혁(2016),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16(2), 2016.06, 106-107면 참조.

61)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17),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의 판례 동향 및 피해자 보호방안 공동세미나 자료집』 57면 사례 참조.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들은,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피해자의 가장 큰 피해는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된 후에는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개명까지 하는 등 삶이 파탄나는 점이라고 말한다.⁶²⁾

“아침마다 눈을 뜨면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을 검색하면서 돌아다녀요”, “일상이 완전히 깨져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피해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이 파탄나는 거지요”

“아무리 삭제하고 삭제 요청해도 인터넷에 계속 떠돌아 다니니까, 제가 소송 지원했던 여성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는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연인관계에서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피해자는 실명까지 유포되서 개명도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 유포로 결국 개명을 했어요”

위와 같이 일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촬영물들을 삭제하고 유포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포 후 대처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유출된 영상을 각 사이트마다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다.⁶³⁾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을 받아 삭제한 개인 음란물 건수는 2014년 1404건에서 2016년 7325건으로 5배가 증가하였다.⁶⁴⁾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하여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가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⁵⁾

이런 현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국 개인적으로 영상물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상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터넷 분석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디지털장의사의 업무 영역은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하고 원치 않는 불법 동영상을 지워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원치 않는 게시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대행하고, 삭제까지의 소요기간은 짧게는 단 몇 분에서부터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⁶⁶⁾

62)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18-119면 참조

63) 경향신문(2016. 9. 23), <http://news.khan.co.kr/>, (검색일 : 2016. 11. 29), "디지털 장의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일을 한다. 그들은 국내의 사이트를 뒤져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 비공개 요청을 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5년 내 부상할 신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15개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카메라(몰카) 유포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다"

64) jtbc뉴스(2017. 6. 15), “소라넷은 폐쇄됐지만...리벤지 음란물' 피해는 여전”, (검색일: 2017. 7. 2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2368

65) 박수연(2016), “디지털성범죄 실태보고서”, 『디지털 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포럼 자료집』, 2016년 11월 29일, 23-24면 참조, “한 예로 소라넷 폐쇄가 진행되는 당시 별도의 백업 사이트까지 존재할 정도로 결국 영상들은 다시 널리 퍼져 나갔다. 이처럼 오래전 동영상들은 ‘고전영상’이라고 하여 10년, 20년 지속해 게시되고 있어 끊임없는 재유포 피해의 예시중 하나이며, 지금도 유명여가수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삭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면 국내, 해외의 영상을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이 매 월 최대 300만원이 소요되며 영상은 끊임없이 재유포되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⁶⁷⁾ 실제 피해자들의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 본 피해자국선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 등 삭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다⁶⁸⁾

다. ‘유포행위’ 관련 조항 개정

(1) 유포행위 처벌규정의 분리와 법정형 강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 형태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촬영자가 단순히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고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와 피해 확산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내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를 구분하여 각 조로 규정하고 각각의 불법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죄수 관계에 있어서는, 판례가 사문서등 위조·변조의 죄와 동행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⁹⁾

앞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벌금형인 이러한 실태는 처벌의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낮은 법정형 자체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재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6조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⁷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66) 서울경제(2017.6.5.), “잇힐 권리 대행해 주는 디지털장 의사 각광, 개인명성관리 일환 정치·경제인, 연예인에 서 일반인으로 확대”, <http://www.sedaily.com/NewsView/10H2Z6IS25>(검색일 2017. 6. 10), 이에 따르면 디지털장 의사는 의뢰자의 삭제대상 정보 URL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개인정보, 명예훼손 요인을 판단해 삭제 처리를 진행한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게시물이나 웹하드, P2P 게시물 등 삭제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67) 박수연(2016), 위의 글, 27-28면 참조, 이에 따르면, “방통위에서는 구체적인 처리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항인데, 이를 알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에서 ‘차단 됐을 시 다음 주소는 000입니다’라고 아예 대문에 띄워 놓는 경우도 다수이며, 물론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처는 없다. 신고 조건도 조악하다. 여러 명이 한 사이트에 대해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을 시, 그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한 사이트는 최초 신고자의 신고만을 접수하여 그 이후에 들어온 신고는 중복으로 처리를 하고, 신고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가 이용해지(=사이트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68)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20면.

69) 배상균(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0-221면 참조.

70)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화나 개인식별정보를 능가하는 영상물의 문제이고 성폭력 범죄라는 점이 감안되어 법정형이 산정되어야 한다. 벌금형 역시 특히 유포의 경우 현행 제14조제1항이 1천만원 이하, 제2항이 500만원 이하로 매우 낮다. 따라서 벌금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향되는 법정형에 상응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⁷¹⁾

(2) 열거적인 유포행위 처벌방식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 형태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⁷²⁾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촬영자가 단순히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경우는 인터넷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 이러한 유포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유포하는 행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시된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제시’에 해당하지만, 위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없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⁷³⁾

이처럼 처벌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생긴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그 범죄의 특성상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유포행위의 방식을 현재 모두 예측할 수 없으며 더욱 지능화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촬영물이 촬영자뿐 아니라 제 3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형법처럼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등의 방식으로

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71)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59-162면 참조.

7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은 각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태양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유포’라고 칭하여 기술한다.

7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에 따르면 ‘제공’이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의미한다. ‘제시’란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상 제공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위 자료집, 111면.

개정하여 다양한 유포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으로 입법 공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⁷⁴⁾

라. 영리목적 가중처벌 조항의 개정

현재 성폭력 처벌법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제1항의 촬영물과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제2항의 촬영물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된 경우, 이 둘을 달리 처벌할 이유가 없다. 어떤 촬영물이든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와 재유포 확산의 위험성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뿐만 아니라,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제2항의 촬영물 역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⁷⁵⁾

마. 유포 방지를 위한 촬영매체의 필요적 몰수 도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판결 유형으로는 ① 촬영매체 등이 압수되지 않고, 몰수형도 선고되지 않은 경우, ② 촬영매체 등이 압수되었으나, 몰수되지 않은 경우, ③ 촬영매체 등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카메라, 휴대폰 등은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삭제된 영상의 복구가 가능하고, 복구된 사진의 유포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정작 그 수단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압수에 소극적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카메라, 스마트폰 등이 아닌 다른 저장매체에 촬영물을 저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지한 채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SNS 계정 조사나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등에 대한 수색 및 압수절차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다.⁷⁶⁾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몰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카메라, 휴대폰 등은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삭제된 영상의 복구가 가능하고, 복구된 사진의 유포가능성이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카메라 등 촬영매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규정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⁷⁷⁾

74) 김현아(2016), 위의 논문, 58-159면 참조, ; 프랑스 형법 제226-2조(사적 비밀의 이용)에서는 “① 제22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2008), 프랑스 형법, 161-162면.

75) 김현아(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2017.8 21-22면.

7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위 자료집, 104면 참조.

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43),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이하 “카메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에 관련된 카메라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의 소유에 한한다)은 몰수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⁷⁸⁾

그런데 제13조의 ‘목적’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회피되기도 한다. 현행법 체계내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보호하는 보호법익은 “불특정 다수가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이다.⁷⁹⁾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이고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성폭력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정통망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이나 일반인의 상식 및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제13조의 보호법익의 취지에 살펴보았을 때,

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제로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제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79) 대구지방법원 2016.6.8. 선고, 2016노24판결., “위 나체사진은 여성의 나신이나 성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욕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나체사진은 음란하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이 음란한 위 나체사진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 나체사진이 A의 자의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목적과 관련된 구성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3.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개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⁸⁰⁾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단순 1회 촬영의 초범이 아니고, 이미 다수 횟수의 촬영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의 성폭력 교육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해주는 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2.5%가 2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데 반해, 일반 성범죄 집단은 1.9%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⁸¹⁾ 이러한 범죄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촬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결과 선고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⁸²⁾

IV. 디지털 성폭력 처벌에 관한 제언

1. 처벌공백 발견 후의 개정 현실

1997년 신촌의 한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당시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1998년 처음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⁸³⁾

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1) 조운오(2016), "성범죄 유형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 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학회 제12권 제4호, 147면.

82) 김현아, 위의 논문, 165-166면 참조.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촬영물의 유포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촬영자의 '촬영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유포행위'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당시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었지만, 정작 그 촬영물을 유통한 더 불법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 후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14조의2)을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⁸⁴⁾

그리고 그 후 2012년에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처음 만들어진 1998년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는 주로 고정형인 CCTV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지만,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형 소형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이러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국 사회현상과 기술의 발달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처벌 공백이 발견되고 나서야 뒤늦게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무죄판결의 선고 문제

(1) 이미지 촬영 무죄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피고인은 컴퓨터 화면의 영상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구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과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대법원 2013도4279 판결)은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83) 第14條의2(카메라등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84)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6.>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6.10.26.>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⁸⁵⁾

(2) 촬영주체에 따른 무죄 판결(일명 셀카 판결)

피해자는 2013. 10. 중순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A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A의 딸 B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위 나체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수감을 명했다. 항소심은 형을 징역 8월로 감경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구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5노2670)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15도16953 판결)은 무죄취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⁸⁶⁾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신체(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된 신체를 포함한다)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통해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신체가 아니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의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화상채팅 등을 통해 노출된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발의), 의안번호 2002289, 제안일자 2016-09-12., 법률안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의 나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로 입법 정비

현재 디지털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은 성폭력 피해자는 있으나 성폭력 가해자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되는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리고 아청법만의 규정으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보하게 될 범죄수단과 방법으로 편집 등 재생산 방법은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후 유포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지만 성폭력 처벌법에서 포섭하지 못해 음란물 유포의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인 피해자가 있는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핵심이다.

또한 직접 촬영자의 유포외에도 그 이후의 재유포 역시 모두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동일하며 심각한 성폭력 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태양을 포섭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정

가. 1심 법원의 판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은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였다.

나. 항소심 판단(춘천지방법원 2016.4.20, 2015노24 판결)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는 위 범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이를 촬영한 자와 같은 범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여 촬영자와 유통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규정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축소해석할 경우,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이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운영 개선방향

하에나 대표 (DSO)

해외 사례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 운영 개선 방향

하예나(박수연) DSO

1. 해외 디지털 성폭력 법안 발의 배경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이미지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은 1990년대 디지털 매체가 보편화 되면서 확산되어, 2000년대 인터넷의 활발한 보급으로 폭증되었다. 주로 카메라 등 촬영을 이용한 성범죄가 온라인 매체에 업로드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등을 위반한 범죄로 확산되는 양상을 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방통위에 접수돼 처리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총 3397건이다. 2014년 삭제·차단 사례인 1404건에 비해 2.42배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접수·처리 사건은 1166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검찰청 '2015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5년 341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7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24.1%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의식은 미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주시되어 오던 문제이다. 이는 온라인이 발전되기 이전, 인쇄 사업에서 처음 주목되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를 ‘이미지 기반 학대’라고 칭하고 있다.

1980 년대에, 남성을 겨냥한 잡지 하슬러 매거 진에서 "비버 헌트 (Beaver Hunt)" 코너로 여성 독자의 이미지를 제보 받아 월간 연재했으며. 그의 사진에는 그녀의 취미, 성적인 환상 및 때로는 그녀의 이름과 같은 여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첨부되었다. 비버 헌트 (Beaver Hunt)에 등장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제출하였으며 게시물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고, 해당 잡지는 고소를 당했지만, 이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이미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낀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에서 찍힌 영상들은, 1980년대에 급속 적으로 증폭하기 시작하였는데. ‘Homegrown Video’ 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도 생겨났었다. 이후 비디오 대여의 20~60% 해당 장르로 만들어진 영상일 정도로 확장되었었다. 하지만 아마추어 포르노

수집가 사이트인 XTube 는 해당 포르노 콘텐츠가 피고용자 의 동의 없이 영상이 게시 되었다는 문의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동의 없이 게시된 이미지 학대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유명하게 알려진 사례는 Kathy Willets와 남편 Jeffrey 1991이다. Jeffrey는 플로리다 주의 보안관 이었으며, 자신의 아내에게 하루에 최대 8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지게 하고 이러한 성적 착취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영상으로 성인 영화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그는 곧 매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는 피해를 받았다고 호도하는 Willets의 증언이 항우울제의 부작용일 뿐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유죄를 인정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처벌 사례 및 근거

‘2.1.1 미국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은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주에만 존재하였다.

기존의 법에 의하면 50개 주 어디서든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인격 권(right of publicity) 저작권법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형사소송 자체를 제기 못하거나 승소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2015년에는 25개 주들이 금전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입법하였고 2016년에는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해 첫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네티즌의 4%인 약 1040만 명이 리벤지포르노의 피해 경험 이 있었다고 한다. 전체 대상 중 약 3%가 누드 또는 이에 가까운 자신의성적인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또 2%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성적인 사진,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80퍼센트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10명중의 1명의 여성은 피해를 당하는 셈이다.**

2016년 미국 방송 리포터를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스토키와 몰래 카메라의 촬영을 막지 못한 호텔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660억 원을 배상 하라고 선고 하였다. 스토키는 51%를, 두 호텔이 49%를 내라고 결정했다.

2.1.2 영국 2016년에는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폭력 전담반을 두 배로 증원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유포형 가해자를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17년 3월 남녀의 누드 사진 위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인식개 선을 위

해 노력중이다. 2015~2016에만 차일드라인(Childline)을 통한 상담 세션에서 온라인 성폭력 (예를 들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었다거나 성적인 이미지/메시지를 공유하고 그루밍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세션이 2014~2015년도에 비하여 24%나 증가한 수치이다. ‘

2015 년 3 월 아이슬란드 지방 법원은 소셜 미디어 페이스 북 페이지에 있는 17세 소녀의 누드 사진을 게시한 18세 전 남자 친구를 유죄 판결했다. 그 소녀는 문제의 사진을 찍어서 남자에게 보냈었다. 그는 일반 형법의 공공 예의의 관한 음화법⁸⁷⁾과 명예 훼손 조항을 위반하여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보상과 법원 절차의 대한 모든 비용을 보상하게 하였다.

2.1.3 독일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달리 독일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포르노그래피와 구분된다. 독일은 포르노그래피 시작 부분에 이것이 연출된 영상이고 유포에 동의한 포르노그래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 동의하의 촬영 및 유포는 사생활 침해로 처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 해결 확률이 높다. 단적인 예로, 독일은 2014년 경찰청 통계에서 “폭력으로 인한 죽음”, “성적인 이유 또는 젠더 기반 폭력”을 집계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명시했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 중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78%, 아동 대상 성착취에서는 85.1%, 강간 등에 대해서는 81% 의 성공적 기소 확률을 보였다.

2014년 5월, 독일의 코블렌츠 지방 고등 법원은 한 여성이 포토그래프인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교제 당시 원고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누드 사진을 삭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반적 인격권의 해석은 기본법 제1조 1항 및 제2조 1항을 기반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개인의 소유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여, 남성이 사적으로 간직한다 하더라도 유럽 인권 협약(EMRK)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 중권을 근거, “잊혀질 권리”에 따라 파트너에게 과거의 모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⁸⁸⁾

2.1.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괴롭힘(Intimate Image)친밀한, 성적인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4년 새로운 법률이 발의 되었다. 이는 사진의 유포를 금지하고, 삭제명령을 취하며,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계장치의 몰수, 배포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이었으나 어린이 및 미성년자 (18 세 미만)만을 보호하고 있었다.

87) breach of Articles 209. And 233.b. of the General Penal Code No. 19/2940. Article 209 reads: “Any person who, through lewd conduct, offends people’s sense of decency or causes a public scandal, shall be imprisoned for up to 4 years, or [up to 6 months]1) or fined if the offence is minor.” Article 233.b. reads: “Anyone who insults or denigrates his or her spouse or ex-spouse, child or other closely-related person, the offence being considered as constituting serious defamation, shall be imprisoned for up to two years

제 209 조 위반 및 233.b. 일반 형법 제 19/2940 호 제 209 조는 "음란 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예의 범절에 불쾌감을 주거나 공개적인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범죄가 미미한 경우 최대 4 년 또는 [6 개월까지] 1 개월 동안 투옥되거나 1 개월 이내에 징역 처분을 받게됩니다. "제 233.b.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을 모욕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은 심각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되는 범죄로 2 년까지 투옥됩니다

88) 국내. 외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관한 법률 비교 및 검토 소희진

최근 2015년 모든 연령층의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다시 게시하여 사용하는 것 까지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 형법 제 162 항 (1) 이미지에 묘사 된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거나 또는 앞뒤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행동하여 출판, 배포, 전송, 판매, 사용 또는 광고를 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기소 될 수 있는 범죄로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89)

2.2 홈페이지 운영자 처벌

2010년 스물네 살의 ‘헌터 무어’가 제작한 IsAnyoneUp 라는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제출한 알몸, 성관계 이미 지등에 등장인의 프로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아이디까지 함께 공개하였고, 이는 이별한 연인 혹은 혐오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신상을 배포하는데 쓰였으며, 하루 25만 명 이상이 방문했었다. Moore는 웹 사이트가 매월 3 천만 페이지 뷰를 끌어 올렸고 매월 1 만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범죄들 국제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그는 FBI에 의해 검거되었다, 2015 년 2 월 18 일, 무어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 (California Attorney Office)에게 이용자들의 신원 도용과 해킹을 조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탄원 아래 그는 최소한 2 년의 감옥 생활과 , 7년 동안 50(5억 6,625만 원) 만 달러의 벌금 을 내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2015 년 2 월 무어는 컴퓨터의 무단 액세스에 대한 가혹한 신분 도용의 조력 및 도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다. 무어는 **강제 징역형에 추가하여 3 년간의 보호 관찰 기간과, 50(5억 6,625만 원) 만 달러의 및 그가 압수 한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에 동의했다.**

2015 년 7 월 2 일 홈페이지의 이용자인 Charles Evens는 컴퓨터 해킹 혐의와 신분 도용 혐의로 유죄를 인정, 여성 이메일 계정에서 수백 개의 이미지를 훔쳐 무어에게 판매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연방 감옥에서 최대 7 년을 선고 받고 11 월 16 일 선고되었다. 무어는 9 월에 선고되었다.**

2015년 4월 샌디에이고 법원은 웹사이트 '리벤지 포르노'의 운영자 케빈 볼라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케빈 볼라르는 본인의 허락 없이 노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및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전

89) Section 162 of Criminal Code of Canada

162.1 (1) Everyone who knowingly publishes, distributes, transmits, sells, makes available or advertises an intimate image of a person knowing that the person depicted in the image did not give their consent to that conduct, or being reckless as to whether or not that person gave their consent to that conduct, is guilty

(a)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Definition of "intimate image"

(2) In this section, intimate image means a visual recording of a person made by any means including a photographic, film or video recording,

(a) in which the person is nude, is exposing his or her genital organs or anal region or her breasts or is engaged in explicit sexual activity;

(b) in respect of which, at the time of the recording,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gave rise to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nd

(c)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depicted retain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t the time the offence is committed.

캐나다 형법 제정 관련의 상세한 정보 <http://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cndii-cdnii/p6.html>

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3. 한국의 대안

‘3.1 법률 요건의 한계 처벌 조항 개선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주로 성폭력 특별법 13조와 14조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 2014도6309에 따르면 법률 구성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대목은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가?
- ②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④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 ⑤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

이와 같이 현행 성폭력 범죄는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좁은 구성 요건을 형성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비해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성폭력 범죄는 음란물과 같이 사회의 법익에 반하는 범죄가 아니다. 폭력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요건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사회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느슨한 처벌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보다 성공적인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추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피해자 특정 요건은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어 이 또한 성립이 어렵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법률 요건의문제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은 물론 형사소송 또한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의 제작과 제보,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동의 촬영 후 비동의 소지 등의 가해가 이에 해당한다.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 제보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합성 제작 및 유포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 청소년에대한 능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 소송을 친권자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률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관과 배정 판검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요건의 폭이 좁아 처벌이 느슨한 것은 주로 참여형이다. 강간모의 댓글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온라인에서 목격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어렵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일반 시민이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증거 수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즉, 심신 미약이었던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피해 인지는 물론 피해 입증 또한 어렵다. 참여형의 디지털 기반 성희롱 중 능욕 댓글 등 온라인 상의 성희롱은 신상정보가 게재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모욕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어렵다. 비친 고죄인 성폭법 제 13조로 신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 또는 실수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약식 벌금 30만원이 최대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사는 지역과 이름 또는 신체의 일부만 촬영되거나 얼굴 사진 하나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요건 때문에 신고 접수가 반려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이름, 사는 곳이 모두 노출 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고접수가 어렵고, 고소 절차에서 직접 자신의 성기와 얼굴을 채증해 가서 수사관이 읽는 모습을 봐야하는 등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많아 상당수가 고소를 포기한다. 설령, 피해자가 끝까지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라넷과 같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가해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도 하다.⁹⁰⁾

3.1 사후 지원 및 관리 확장

형법적인 처벌만큼이나 피해자가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중 영상이 크게 알려진 경우 사회의 지위를 잃거나 사회권을 박탈당하는 등의 일을 겪는다. 경력 단절 지원 및 사회권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

3.1.1 초상권/인격권(퍼블리시티권)의 보호로서의 피해 보상.

자신의 특징, 이름, 이미지, 형상, 등이 함부로 상업요소로서 쓰이는 것을 제어하는 개인의 권리 정체성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를 ‘성적 상품’으로 이용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예이다.** 웹하드의 경우 가해자는 현금으로 상용화 가능한 포인트(point) 혹은 인터넷 화폐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막대한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광고나 여타 상품 홍보를 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도촬 이미지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이윤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로서 얻게 된 피해 보상을 피해를 가해자에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의 대한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현재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하나 이것이 디지털 성폭력에 적용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3.1.2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권리 인정과 피해 지원 확장.

해외에서 스스로 촬영한 이미지로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였다. 한국의 저작권법의 경우 여러 번의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의 관리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⁹¹⁾ 이는 저작권법을 참고 할 수 있다. 11차 개정(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안다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⁹²⁾

90) 국내, 외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관한 법률 비교 및 검토 소회진

91) 이는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 ‘웹하드 필터링’ 의무화 해도 ‘불법 음란물’ 여전 <https://mn.kbs.co.kr/news/view.do?ncd=3107719>

92)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또한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라는 제도가 존재해 신탁 인을 대신해 **저작권재산권의 침해정지가 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또한 저작권 관리 위원회가 존재하여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빠르게 권리 침해의 대하여 파악 할 수 있다.⁹³⁾ 또한 웹하드, P2P의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제공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관리 아래 피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위원회’등의 법인이 존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존재하나 디지털 성범죄는 ‘상업적 음란물’영역으로 취급되어 법의 보호 아래에 놓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하였다. 국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저작권법 이상의 관리 감독과 고소 고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의 대한 조항 사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단 저작권법의 영역에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해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양도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러한 피해 영상들이 타인의 의해 ‘강제적으로 상업화’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 하거나 판매하고 ‘해당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 시스템을 따르되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보호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3.1.3 불법 파일 공유의 적극적 차단.

‘불법 파일의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와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포함된다. 영국은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에 있어 강력 처벌을 선언하였는데, 토렌트 시스템의 적극적인 처벌과 차단을 진행 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1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세 곳을 강제 폐쇄했다. 이번 법원의 토렌트 사이트 폐쇄 결정에 따라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버진미디어와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 브리티시 스카이 브로드캐스팅 등 6곳은 ‘킵엑스 토렌트’와 ‘페노피’, ‘H33t’ 등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웹사이트의 목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료를 무료로 지원하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 법원은 이 같은 토렌트 사이트가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토렌트 사이트의 적극적인 차단과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3)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2.>

3.2 수사영역의 확장

3.2.1 해외 홈페이지 운영자의 대한 강력 처벌과 해외 공조

해외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의 경우 한국 법의 영역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광고를 올리고 트래픽수(홈페이지 이용자수)의 따라 일정의 광고비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영상이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활발한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다페스트 협약 재검토

유럽 의회에서는 이러한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을 진행하였다.’ 이 협약은 인터넷 및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서 **특히 저작권, 컴퓨터 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중오 범죄 및 네트워크 보안 침해**를 다루는 인터넷 및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처벌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또한 해킹, DDOS 등의 데이터 공격과 컴퓨터 네트워크 검색 및 차단과 같은 일련의 권한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⁹⁴⁾ 실제적 규정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및 국제 공조 수사 체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 가입이 되면 가입된 국가들끼리 각국에서 겪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핫라인이 설치되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약은 2001년 11월 23일 캐나다, 일본, 미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서명했다. 또한 2016년 7호주,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 일본, 모리셔스, 파나마, 스리랑카 및 미국 이 참여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토록 한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서 현재 56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4월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 인사가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다페스트 협약’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애초 조약은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점차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테러 조직의 통신 정보를 공유하는 테러 방지로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다. 테러 위험인물들 간의 통신이 대부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 정보 확보가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것이다.⁹⁵⁾

당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선 참여자의 대다수가 조약 가입에 찬성했지만, 감청(監聽) 문제가 대두되면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1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청와

94)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signatures>

95) 테러 정보 교환 국제 연대에 못 끼는 한국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0345.html 조선일보 성호철 기자

대가 감청 요건 완화 문제를 주장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3] 조약 참여 요건에 '24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실시간 감청 정보 확보(통신 업체의 감청 설비 보유)'가 있어 협약에 참여해 타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우리도 타국이 요구하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실시간 감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우리나라 통신비 밀보 호법 등과 상충돼 국내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즉 **현재 한국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ASEAN)지역 포럼 (ARF) 으로서, 말레이시아와 유럽 연합은 2016 년 3 월 사이버 사고 대응 중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ARF 워크숍을 주최했다. 워크숍은 파괴적인 국가 또는 국제 사이버 보안사고 시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명성, 협력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호주,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한민국, 태국 그리고 동 티모르 대표자를 비롯한 120 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나, 특별하게 협약이 진행 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빠르게 발전하는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국제 공조 협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의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1.5 디지털 성폭력 전담 부서 설립

현재 피해자가 호도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하여 호도할 전문 기관이 없는 부분이다. ‘여성 청소년 수사과’에서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며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성폭력의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다.

3.1.5 그루밍 관련 법안 제정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기구 ‘인터넷 감시 재단’(IWF)이 발표한 2006년 자료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인터넷 아동 음란물을 많이 ‘유통’하는 국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선 아이들을 납치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선 미성년자들이 흥미 삼아 음란물을 만든 것이 나중에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 국내 그루밍의 대한 인식이 미비함을 입증한다. 영국에서는 아이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 고의적으로 성인의 생식기를 어린이에게 노출시킨다, 성적 포즈로 아이를 촬영하기, 아이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들으라고 격려하거나 아이의 앞에서 부적절하게 나신을 보여주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 모두를 ‘학대’로 정의한다. 2015년 10월, 랜덤채팅을 이용한 그루밍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5명의 실험자를 통해 각 13살~19살의 미성년자 여아의 프로필을 꾸며 ‘앙푹’, ‘즐푹’ 등의 채팅 어플에 동시에 투입하였다. 두 차례의 실험 결과, 1시간동안 성인 남성으로부터 최소 10개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성적 요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3개 이상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자의 지역이 달랐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지역별 가까운 사람에게 프로필이 드러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실험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해당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바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금전’을 통한 유혹보다는 친분을 쌓거나 ‘흥미로운 것을 알려준다.’는 등의 호기심 유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만나자’는 요구 혹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실험자에게 ‘너도 사진을 보내야 한다.’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 (이외 단순하게 친근한 접근은 표기하지 않는다.)⁹⁶⁾

영국의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는 아동에게 성적인 의도로 접근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그루밍’ 법안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가 가장 강력한 그루밍 법안을 가지고 있다. ‘

3. IT 기업체의 대안

3.1 해외 IT 기업

해외에서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IsAnyoneUp’ 사이트 등에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심이 주목된 이후 기업들은 해당 사항에 대한 방침을 내세웠다. 2015 년 2 월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온라인 게시판 레딧은 묘사 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을 발표했다. 2015 년 3 월, 트위터 는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 및 특히 이미지 기반 학대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였으며. 트위터는 3 월 11 일부터 동의 없이 게시 된 누드 상태 또는 성행위에 관여 한 사진, 비디오 또는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연결 고리'를 즉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에 따르면 "[트위터]가 사이트의 나쁜 행동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에 대응하기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검색 시장의 거의 90 %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는 2015 년 6 월 요청에 따라 이미지 기반 학대 영화 링크를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 마이크로 소프트는 7 월에 이를 따랐다. 둘 다 희생자가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여 완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외 기업에 있어 국내 피해자의 경우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신고 플랫폼을 ‘영어’로만 제공하거나, 신고 관련된 양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점에 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경우 가해자의 IP제공에 있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디지털 성폭력의 수사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삭제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1 국내 IT 기업

국내 사이트도 피해자의 영상 삭제가 빠르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색인에 있어 사이버 장의 사업체에 기대어 색인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피해자는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게 된다.

이 중 많은 수가 웹하드의 모니터링에 소모되는데, 웹하드 P2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의무를 가지며 ‘기술적 조치’⁹⁷⁾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

96)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하에나) 전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7/5 국제 컨퍼런스

97) 27. "저작권 대리 중개업"은 저작 재산 권리, 배타적발행 권리,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되어있다.⁹⁸⁾ ‘디지털 성폭력’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권리 침해시 ‘음란물로 삭제 처리’ 되는 것이 아닌 해당 피해자에게 ⁹⁹⁾공지하는 등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99)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향 토론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성폭력, 음란물, 명예훼손이나 모욕, 유해이미지 등 각각 다른 종류의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구성되었던 법적 개념을 넘어 디지털 이미지나 정보를 활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체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로질러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하에서는 앞서 발표되었던 훌륭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페미니스트 법학 연구자로서 향후 대응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면상 이하에서는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화를 통해 드러나는 온라인상 성폭력의 특성

디지털 성폭력 실태 양상의 종합 분석을 통해 본 가해행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집단성(collectiveness)이다. 디지털 성폭력 개념은 그 유형을 참여형과 소비형까지 포섭함으로써 이러한 성폭력이 가진 집단적 가해의 속성을 드러낸다. 특정 사이버 공간에서 해당 촬영물을 유포, 소비, 참여하는 행태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집단성인데, 집단성은 유사한 촬영물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본문에서 소개한 ‘골뱅이 강간 모의(초대)’는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집단성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접촉적인 성폭력의 형태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접촉적 성폭력 형태로 발전시키고 사이버 성범죄자를 강간 교사범, 방조범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의 집단성을 이해한다면, 디지털 성폭력의 행위책임이 집단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적 행위책임은 온라인 가해행위에 참여한 이들뿐 아니라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있다. 두 번째는 차별적 혐오로서의 성격이다. 참여형 디지털 성폭력은 성별에 기초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혐오를 공적으로 선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제작형 가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 누스바움의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미지, 신체 일부만을 보여주는 이미지, 강간 위협 등의 대상화가 여성혐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최근 EU에서는 여성 이미지의 변형(합성)을 통한 성적 대상화 등을 혐오표현으로 규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영리성이다. 유포형의 경우, 유포를 통한 영리적 이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는 디지털 성폭력의 성격을 영리 목적의 사이버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형 가해는 이러한 영리목적의 행위를 추동하는 수요를 창출한다. 마지막 특성은 피해영향의 성별성이다.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에 대한 말살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자살 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유포는 성적 이중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극심한 피해영향을 가져오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Femicide로서 성격을 가진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가 접촉성/비접촉성,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성의 존재 여부로 나눠지나, 이러한 평가기준은 디지털 성폭력 내 또는 다른 성폭력과의 관계성과 피해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선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들은 이것이 사회구조적된 폭력으로서 젠더 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그로 인한 낙인 등 성별 불평등 구조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양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 처벌법규정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

현재 형사법체계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법규정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가지는 침해적인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벌법상 구성요건의 불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김현아 변호사님이 충분히 제시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보호법익의 성격에 따른 포섭범위와 한계,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인 ‘음란물’ 내지 ‘음란행위’, ‘청소년 유해’ 등의 법적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촬영물의 이미지에 대한 판단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의 유발”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 디지털 성폭력 규제방식으로 음란물 규제체계를 활용할 경우, 음란물의 불법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합의 및 자유주의적 법체계와 성도덕에 대한 규제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음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로서 명예에 대한 죄(정보통신망법, 형법)는 명예에 대한 내부감정 내지 사회적 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건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침해행위를 일부 포섭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명예라는 가치적 속성의 보호법익이 가지는 특성상 관련 규정이 피해당사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의 특정 및 의사표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명예에 대한 내부감정 내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성별화되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중심적인 평가와 해석으로 여성의 피해를 간과하거나 사소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처벌규정들이 현재 디지털 성폭력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의 침해적 속성이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규정의 보호법익은 젠더폭력으로서 디지털 범죄가 가지는 침해적 속성을 포섭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폭력이 가지는 개인에 대한 피해 영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로서 보호법익의 구성방향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바탕이 되는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보호법익의 설정 하에서 사생활 침해를 가장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여기에 성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가중적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체계의 정비와 필요하다. 차별적 혐오를 조장, 선동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에 대한 침해적 속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보호법익은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원리 및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특성(성별 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질서가 된다. 이에 대한 규제는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차별적 혐오와 이에 대한 옹호 등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의 도입으로 가능하다.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단계별 규제방안 및 보호처분 도입의 필요성

디지털 성폭력의 관계성을 보여준 발표문들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규제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제작단계에서의 규제방안으로 ‘물카’ 등에 동원될 수 있는 소형위장 카메라 구입 허가제의 도입, 유통단계에서의 규제방안으로 사이버 범죄로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참여와 소비단계에서의 규제를 위한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률 도입 등이 각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규제를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활용하여, 젠더폭력방지위원회(가칭)가 각 단계의 규제를 총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본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IT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정책마련 및 집행에 따른 이익을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재범 및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이다. 수강명령 등 현재 보호처분 이외에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범죄자의 디지털 장비 및 사이버 접근에 대해 일정기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사이버 접속 내역과 디지털 내지 컴퓨터 장비를 감시하는 재범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국내 필터링 시스템 현황 및 관리체계

뮤레카 김기문 대표

1. DNA 필터링 시스템이란?

인간의 지문이나 DNA 처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점이 있듯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에서 특징점 DNA를 추출하여 검색서버에 등록 후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발생할 때 이 DNA 검색기술을 활용하여 제휴 콘텐츠인지 또는 차단할 해야 하는 콘텐츠인지 여부를 제공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104조 4단계에서 언급된 "해쉬값필터링" 은 파일을 다시 편집하거나 인코딩하면 또다른 해쉬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업로더가 임의로 변조하여 필터링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DNA필터링 시스템은 영상 안에 있는 내용 중 특징점을 찾아 검색하는 기술로 임의로 변조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차단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때문에 해시값필터링 보다 상위 개념의 진일보한 기술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 DNA 필터링 프로세스

자동으로 콘텐츠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 필터링 시스템은 현재 웹하드와 권리사 (방송사 및 영화사 등) 와의 3자 계약을 통하여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웹하드 사에게는 당사의 필터링 모듈을 업/다운로드 프로그램에 장착하여 배포하게 한 후 권리사 들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 영상에서 DNA를 추출하여 필터링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후 업로드나 다운로드 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검색서버에 등록된 DNA 값과 비교하여 저작물여부를 판별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설명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1]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적용 DNA 필터링 시스템 구성도

1-2. DNA 필터링 시스템 활용 및 적용 현황

소개해드린 대로 이와 같은 DNA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뮤레카는 2006년 소리바다 음원 필터링을 시작으로 음원3단체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 한국음악실연자 협회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방송사용 음악 분배 , 정산 사업 그리고 네이버 , 싸이월드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포털 서비스에도 저작권보호 필터링 업무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웹하드 특징기반 성능 평가를 인증 받아 사업기간 6년여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통된 콘텐츠의 수는 약 2억 4천여만건에 달하며 현재는 모바일 분야까지 적용분야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년도	유통건수
2017	9,656,645
2016	17,444,442
2015	24,037,973
2014	37,701,690
2013	70,043,263
2012	88,639,476
합계	247,523,489

표 1] 필터링시스템을 통한 저작권물 유통건수 (6여년간)

2. 몰카 & 리벤지포르노 적용 및 관리 방안

그럼 그 동안 저작권보호 기술로 활용되어 온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 리벤지포르노 차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림 2] 개인유출물 요청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현재 인터넷 검색이나 웹하드에 문의하여 당사로 접수 되고 있는 몰카 & 리벤지포르노 차단 요청 건수가 최근엔 월 평균 5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방송 , 스마트폰 등 영상콘텐츠를 쉽게 촬영 및 배포 할 수 있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피해사례가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개인대상으로 시스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만큼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로 직접 연락이 오는 개인유출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는 필터링 기술업체의 도의적 의무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 해왔으나 최근 인터넷장의사, 잊혀질권리 등 차단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금액을 받고 당사에게 필터링 요청을 해오는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검색 서버 운영 및 시스템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받아 차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하드에서도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콘텐츠 등 인력으로 모니터링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웹하드 시장에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지난 6년간 운영되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용 즉시 보호조치가 가능한 만큼 DNA 필터링 플랫폼을 통해 몰카 및 리벤지포르노 영상 차단 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웹하드 이외 시장에 대한 DNA 필터링 적용 방안도 꾸준히 협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 론 문

아프리카 TV 전동준 전략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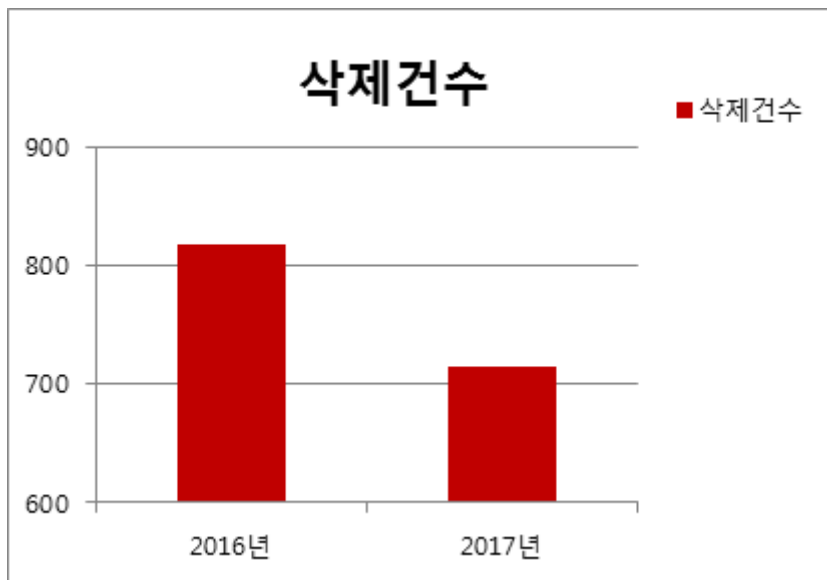
웹하드/P2P 디지털성폭력물 신고 및 처리현황과 국내 필터링 시스템 일반사항 및 관리체계

김호범 (사단법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1. 웹하드/P2P 디지털성폭력물 신고 및 처리현황

웹하드/P2P(이하 '특수OSP')에서 디지털성폭력물에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이 각 특수OSP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남기지 않는 관계로 집계된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나마 구분하여 집계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적게는 1일 0건 또는 1건, 많게는 4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된 바 있습니다.(건수는 삭제된 파일수를 기준이며, 압축파일 내 여러 개의 파일도 1개의 건수로 집계함)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보더라도 신고되고 삭제되는 건수가 2016년도 817건, 2017년도 7월까지 715건으로 2017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되는 건수가 더 나온다는 가정하에 2016년도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1. 기존의 디지털성폭력물 삭제 프로세스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신고가 게시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게시물의 게시물번호, 게시물명, 파일명을 기준으로 검색 후 삭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신고자가 해당 건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경우)

특수OSP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등록요건의 기본골자는 모니터링요원을 기본 2명이상, 일평균 업로더 계정수 4,000건 당 1명의 전담요원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OSP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된 정상적인 CP<Contents Provider>사의 수는 평균 40여개 업체로 해당 CP사의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인 필터링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불이익(패널티 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모든 CP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하여야 합니다.

2-1. 국내 필터링(특수OSP) 일반현황

P2P와 웹하드의 경우 2007년도부터 저작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2008, 2009년도에 저작권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유통채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본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협회가 임의단체로 2008년도에 생기게 되었으며, 2009년도에 저작권자에 대한 정산 등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당시 현존하는 최고의 필터링 조치인 해쉬값 필터링 보다 상위 개념의 DNA필터링을 발굴하고, 해당 필터링에 대한 강인성 등 신뢰할만한 기술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특수OSP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장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필터링 즉 기술적 조치라 함은 저작권법 104조(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에 따라 취하는 조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보면 총 5단계(1단계:제목필터링, 2단계:문자열필터링, 3단계:확장자필터링, 4단계:해쉬값필터링, 5단계:특징기반필터링)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은 위 5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4단계 및 5단계 기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4단계 해쉬값 필터링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해쉬값(1mb해쉬, 10mb해쉬 등)추출이 가능하며, 추출된 해쉬값으로 동종 인코딩 파일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코딩 값이 같은 파일에 대한 조치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단계 특징기반 필터링은 오디오, 비디오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동일 콘텐츠(다른 해쉬값을 가졌으나, 내용이 같은 것)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현재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증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서 98% 인식율을 보이는 경우 기술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업체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2-2. 국내 필터링(특정기반) 관리체계

특수OSP는 저작권법 104조에 따라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적조치를 취해야하며, 24시간 365일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정기반 기술적조치인 DNA 필터링의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사업자와 특수OSP간 계약을 통해 해당 필터링이 진행되며, 다양한 적용방식(서버 방식, 클라이언트 방식) 중 현재는 클라이언트 방식 즉,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파일의 제휴, 삭제, Unknown으로 구분하여 조치됩니다.

DNA 필터링을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는 원본파일에 대한DNA(비디오, 오디오)값 추출이 DNA 필터링의 근간이 되지 때문입니다.

DNA값 추출 후 원본이 없더라도 해당 값이 기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특수OSP 클라이언트에 장착된 모듈을 통해 지속적인 필터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적 조치인 DNA 필터링이라 하더라도 98% 이상의 완전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변종 파일에 대한 해쉬, DNA 추출을 통한 연속성을 담보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지재권자의 피해보다 경미한가?

남희섭 대표 (DSAC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저작권자의 피해보다 경미한가?

2017. 9. 남희섭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공적 자본의 배분은 적정한가?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 공적 자원 투입과 비교할 때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지재권자의 피해보다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 형벌

지재권	성폭력처벌법
• 저작권 침해죄 5년, 5천만원 • 특허권 침해죄 7년, 1억원 • 상표권 침해죄 7년, 1억원 • 디자인권 침해죄 7년, 1억원 • 영업비밀침해죄 10년, 10억원(해외 유출), 미수범도 처벌, 예비·음모는 3년, 2천만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반의사 촬영 또는 촬영물의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5년, 1천만원 • 반의사 반포 등: 3년, 5백만원 •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7년, 3천만원 • 미수범도 처벌(제15조)

■ 범죄의 수사과 사법경찰

2015년 범죄수사의 단서		성폭력	성폭력처 벌법	부경법	상표법	저작권	특허법
신고	피해자 신고	83	?	-	18	1	-
	고소	62	?	3	18	829	4
	고발	4	?	-	16	9	-
	자수	2	?	-	1	1	-
	진정·투서	3,638	?	327	1,090	38,299	205
	타인신고	1,214	?	6	884	9	-
	소계	5,003	?	336	2,027	39,148	209
미신고		19,817	?	131	1,510	428	4
미상		34	?	20	13	12	6
총계		31,063	?	491	4,352	39,624	219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196~199면〉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저작권 경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시행 2017.5.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47호, 2017.5.1., 일부개정]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제2조)
불법저작물단속 기본계획 수립(제7조), 업무추진실적보고(제8조), 합동단속(제9조) “검찰·경찰 등 단속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수갑·포승·전자충격기도 사용(제11조)

저작권 보호원

저작권보호원은 민간단체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산하기관 저작권보호센터를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아래 업무를 법정화함.

-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저작권보호원이 민간단체일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 326억원 지원.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4,139	5,353	6,942	7,415	8,702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보호센터에 예산을 지원한 내역 단위: 백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예산은 2016년에만 116억원, 2017년에는 133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장 많은 예산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에 투입(2016년 49억원, 2017년 47억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총 13,312백만원 [2017년 저작권정책관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자체부담	증감액(B-A)		비 고
					%	
합 계	11,554	13,312	800	1,758	15.2	
인건비	2,050	3,089	764	1,039	50.7	정원 67명
경상비	475	1,134	36	659	138.7	
사 업 비*	9,029	9,089	-	60	0.7	

* 정품콘텐츠 이용환경 조성(600),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240),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1,423),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250),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300),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25),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483),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882),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4,736), 저작권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ICOTEC, 150)

구 분	2016 예산액 (A)	2017 예산액 (B)	증 감		비 고 (집행주체)
			증감액 (B-A)	증감률 (%)	
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16,918	20,120	3,202	18.9	
가.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5,057	17,863	2,806	18.6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743	743	-	-	자체
○ (변경)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2,525	4,223	1,698	67.2	한국저작권보호원
○ (변경) 정품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600	6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100	1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	200	2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300	3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변경)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240	24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변경)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1,498	1,423	△75	5.0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규)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	250	250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	300	300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저작권 보호·협력	2,910	3,983	1,073	36.9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2,680	2,503	△177	6.6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 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230	230	-	-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규)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	1,250	1,250	순증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잠정)
○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674	483	△191	28.3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938	882	△56	6.0	한국저작권보호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	4,929	4,736	△193	3.9	한국저작권보호원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4,356	3,706	△650	14.9	한국저작권보호원

구 분	2016	2017	증 감		비 고 (집행주체)
	예산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400	4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173	173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규)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	457	457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다.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311	1,185	△126	△9.6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861	735	△126	△9.6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	450	450	-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7,100	6,434	△666	△9.4	
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100	6,434	△666	△9.4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4,250	4,275	25	0.6	
-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4,050	4,075	25	0.6	
- 저작권기술 실용화지원	200	200	-	-	
○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2,550	1,900	△650	△25.5	
○ R&D 기획, 평가, 성과추적	0300	259	△41	△13.7	

특허청의 상표 경찰

지원시책
지식재산권보호지원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해외 지재권 분쟁 초등대응 지원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서울, 대전, 부산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위조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상표 경찰 단속 지원.

(백만원)

구 분	'13 결산	'14 결산	'15 결산	'16 예산(A)	'17 예산(B)	증 감 (B-A)	%
○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1,344	1,300	1,301	1,303	1,408	105	8.06

연도별 품목별 단속 실적

○ 특사경 도입 이후, 위조상품(의류, 가방, 시계 등) 사범에 대해 직접 형사입건 실시하여 검찰에 송치한 현황

(단위: 점/억 원)

품목별	'10.9~'12	'11	'12	'13	'14	'15	계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계	28,629 /54.8	28,589 /85.5	131,599 /246.7	822,370 /567.2	1,114,192 /880.8	1,197,662 /976.5	3,323,041 /2,811.5

□ SNS(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현황

<형사입건 단속실적('10.9~'15)>

(단위 : 명, 점)

구분	'10.9~'12	'11	'12	'13	'14	'15
형사입건(명) (온라인)	45 (11)	139 (18)	302 (109)	376 (117)	430 (41)	378 (170)
압수물품(점)	28,629	28,589	131,599	822,370	1,114,192	1,197,662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실적('10.1~'15.7)>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
오픈마켓 등 판매중지	2,890	3,566	4,256	4,422	5,348	5,673
개인쇼핑몰 폐쇄	207	364	505	828	454	418
계	3,097	3,930	4,761	5,250	5,802	6,091

* '09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위탁 운영

- * 국내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등), 포털(네이버)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여성가족부

청소년 업무 담당자만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있으나 단속사무 지원은 하지 않음.

2014년 기준 여가부 특사경 지명자 총 15명, 수사전담조직 0명.

특허청 특사경 지명자 총 22명, 수사전담조직 22명.

문체부 특사경 지명자 총 32명, 수사전담조직 24명.

■ 시청 행위의 처벌은 가능한가? - 생산과 소비의 상호보완성

저작권법 제104조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호, 제2호 위반하면 3년, 3천만원(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5호), 제3호 위반하면 1년, 1천만원(제137조 제1항 제3의2호)

암호화된 방송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8의2호). 보호대상은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 위성, IPTV 방식의 방송 신호(김찬동 2012,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보호에 관한 연구 14면).

이 규정은 한미 FTA 제18.7조 제1항으로 도입되었고(제1항 나목은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하는데, 여기서 “사용”은 “사적 또는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해당 조항의 각주). 미국은 통신법(미국법전 제47편) 제553조(케이블 서비스의 무단 수신), 호주 저작권법 제5AA편(다만 호주 저작권법은 단순히 시청각 기기의 스위치를 켜서 시청(청취)하는 행위, 또는 암호화된 방송에 무단 접근하여 만든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청취)하는 경우

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와 달리 미국-호주 FTA의 경우 암호암호화된 방송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receive and make use of”라는 표현에 사적 시청(청취)을 포함한다는 각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미국은 호주와의 FTA 협상 및 이행상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한미 FTA에서는 각주를 부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경우에는 호주와는 달리 암호화된 방송을 무단 접근하여 시청하는 행위도 민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김현철 (2007)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155면)., 싱가포르 방송법 제48조, 제48A조.

일반 시청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보고 제18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도성이 없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바 있음(의안번호 제14205호, 김찬동 2012, 61면에서 재인용).

예비 행위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국회 특특 시민감시단 : 국회 특특의 구체적 제안사항

이에나, 서지희

국회특특 시민 의견 취합 내용

작성자 이예나, 서지희

I. 서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2배 가까이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 올해 4월 말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 216건 중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68%(147건)를 차지했고, 집행유예 17%(36건), 실형 9%(20건), 선고유예 5%(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벌금형이 나온 사건 중에서는 300만 원 이하가 77%(113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1심 형량의 감경 요소(미기재 86건 제외)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85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32건)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이 다운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은 영상까지 지울 수 없어서 지워도 지워도 계속 올라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평생을 모욕과 불쾌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따라, 피해자가 자살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아주 경미한 상황이며 또한 위처럼 벌금형이 대다수인 처벌은 '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며 이에 따라 재범률이 50% 이상에 육박하는 사태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 특별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목에 명백히 위배되는 실상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실상에서 피해자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극악의 범죄임을 직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벌금형이 아닌 필수 징역형을 바탕으로 하며 현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는 고통을 고려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 게시물도 지속적 유포될 점을 참고해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고, 피해 게시물 삭제 처리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몰카를 찍어 협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는 파직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전례가 없음에 법 제정조차 난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벌수위를 높여 범죄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II. 구체적 제안사항

90여 일 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전량 회수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식별 불가능한 촬영 가능 기기) 미신고 및 개인 소지가 불법임을 고지한다.

p2p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위의 사항을 파일 업로드시 필수 고지할수있도록 경고창 혹은 배너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반입 금지임을 고지하고 밀반입 적발 시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검색대에서 적발 가능)

1) 환수 카메라는 렌즈에 기기 시리얼번호와 일치하는 워터마크를 새기고 경찰서에서 직 접 관리 수거 한다.

- 필요 시 개인 신상정보와 이용목적을 경찰서에 방문 기재 후 담당자의 허가 아래 일정 기간 이용 후 필수 반납해야 함
- 분실 시 과태료 부과

2) 해당 기기의 고유 시리얼 번호와 워터마크 번호의 일치 여부를 대여자 신상과 함께 등록 관리 한다.

- 경찰에서는 대여/반납 시 해당 기기의 고유 시리얼 번호와 워터마크 번호가 일치하는 지 직접 확인 관리 하도록 한다.

3) 개인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유통 제조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 벌 과 더불어 해당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명을 정보공개 하도록 한다.

4)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시 게시자의 IP 등을 추적하여 가해자의 기기 회수 조치.
워터마크 미등록 혹은 워터마크와 시리얼 번호가 불일치할 시, 워터마크가 식별 불가 하게 훼손되었을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 유포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다.

5) 몰래카메라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형사절차와 더불어, 초상권에 기초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민사절차상 근거로서의 초상권>

- 초상권 : 나의 초상을 타인이 허락 없이 촬영/사용하지 않도록 할 권리
- 초상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신체적 특징 ex) 얼굴, 유명 발레리나의 발
- 저작권이 저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무단복제와 무단배포를 금지하는 것처럼 초상권도 무단취득과 무단공표를 금지
-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미계의 퍼블리시티권 : 지명도, 홍보력 보호

초상권 침해의 요건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요건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의	얼굴, 성명, 음성 및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기표의
허락 없는 취득 또는 공표	허락 없는 공표를 통한
	지명도의 이용

- 프라이버시 개념을 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보호(또는 인격권)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할 때 '프라이버시권인 인격권이 초상권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 침해

- 1) 일반인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및 게재 : 초상권 침해가 선언된 경우가 다수
-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 초상권 침해 선언은 예외적
-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 선언

6) 몰래카메라 영상물 유포에 관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여침해>

- 기여침해(contributory negligence) 이론 :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범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 신기술의 기여침해 여부 판단 기준 (미국연방대법원 소니사 VTR 사건) : 몰래카메라?
 - 1) 신기술이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목표로 쓰이는 비중
 - 2) 기술자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고무하거나 방조하는 정도
 - 3) 기술자와 침해자 사이의 관계의 지속성 및 상업성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중략)

참고문헌

- 박경신,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2004.
- 박경신,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51, 2008.
-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수사과장 장우성 총경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명 ‘몰카’)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 더구나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될 심각한 추가피해 발생, 신속한 수사 및 차단조치 필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속칭 몰카) 범죄 분석

-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 특히 여성 불안 야기
- 범죄유형은 ① 여성이 가장 불안해하는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 5.1%** ②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85.5% ③ 배포행위 9.4%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 7월말
소계	6,457	8,375	8,477	5,926	3,581
① 설치 촬영	322(5.0%)	335(4.0%)	504(5.9%)	325(5.5%)	192(5.4%)
② 직접 촬영	5,392(83.5%)	6,716(80.2%)	7,368(86.9%)	5,390(91%)	3,178(88.7%)
③ 순수 유포 등	743(11.5%)	1324(15.8%)	605(7.1%)	211(3.6%)	211(5.9%)

※ '15년 몰카 불법유통 특별단속 이후 미인증·등록 제품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장소는 △역사터미널(29.3%) △노상(19.4%) △지하철열차(17.5%) △숙박업소(15.7%) 順

- 다만, **방심위에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최근 급증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암수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방심위에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 : '15년 3,636 → '16년 7,325건

⇒ 수사과정중 性的 피해 진술 등 심리적 부담으로 개인이 직접 방심위에 시정 요구 추정

□ 집중단속 기간 : 9. 1 ~ 9. 30 (30일간)

□ 주요 추진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 지자체·여성단체와 협업, 백화점·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및 범죄우려지역內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국민 불안감 해소
- 각 경찰서별로 지자체에 ‘상시 점검반’ 설치 요청, 단속 동력 확보
 - 현재, 서울·김해·양산·전주·태백·철원 등 6개 지자체, 점검반 운영중
 - 탐지장비는 186대 보유중(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 ⇨ 내년에 288대 보급 추진

②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 지역별 전자제품 상가 및 도소매업체 불법 유통행위 **철탄수집 강화**
※ 인터넷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기기 유통경로 역추적
- 유관 기관(중앙전파관리소) 합동으로 불법 제조·판매·유통 등 단속
⇒ 집중단속기간중 공개 현장점검 실시, 경각심 제고
※ 중앙전파관리소 지부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 세관과 협조, 불법 전파기기 밀수입 등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③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는 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경찰대 가용경력 최대 활용, 단속 강화
※ 지하철경찰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청에서 운영중
- 영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동종전과 또는 피해자가 다수인 피의자는 **구속 수사 원칙**
- 「검거→유포여부 확인→삭제차단→피해자 보호」 등 국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단속사례’ 발굴

④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 전국 사이버수사관 및 누리캡스 활용,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음란물(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 등 불법·유해정보 지속 모니터링
- 음란물 공급 차단을 위한 **주요 3대 공급망*** 단속에 집중
※ △ 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해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BJ

⑤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방심위·여가부 협업)

- ▶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間 온라인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촬영물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통상 15일 → 2~3일)
- ▶ 전국 해바라기센터(29개)를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 여성가족부 협업,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 검토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 론 문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 론 문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참고자료

국내·외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비교 및 검토

소희진

목차

▣ 제1주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실태

I.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정의
-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분류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상
-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적용
- iv.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 i.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ii. 입법부의 인식 개선 노력

▣ 제2주제: 해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

I. 일본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 iii. 일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상
- iv.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적용

II. 독일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 iii. 독일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특징

III. 영국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IV.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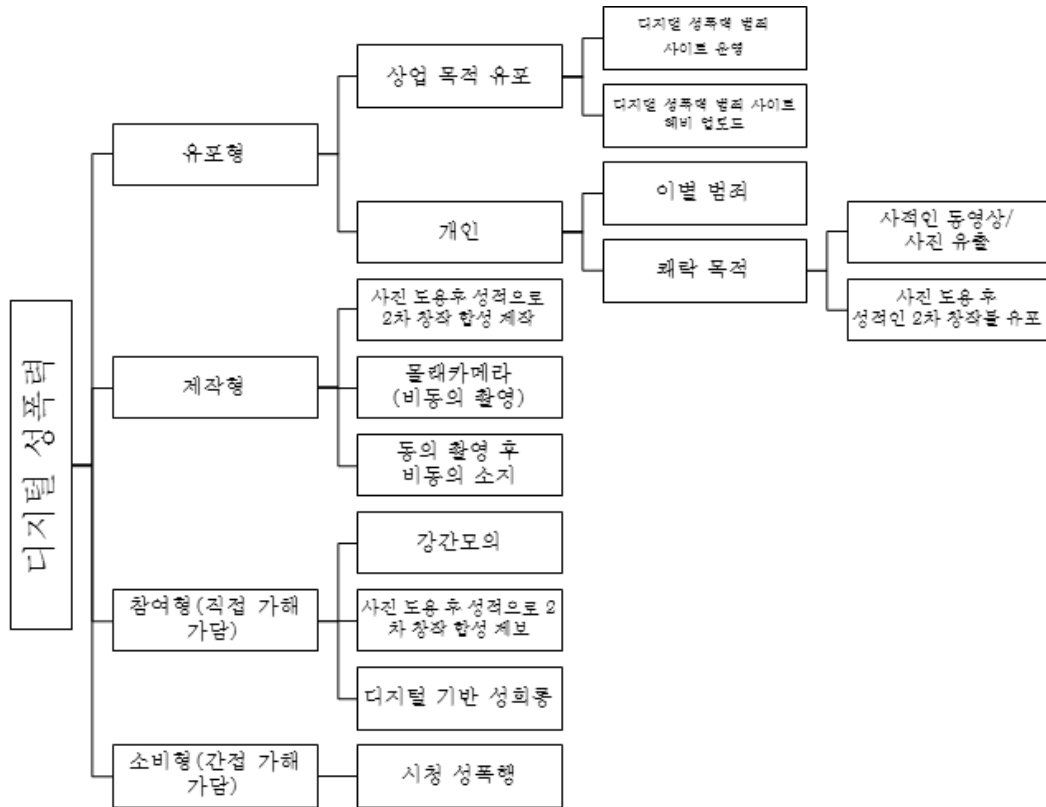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 ii. 호주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특징

V. 미국

-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I.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분류

디지털 성폭력 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동의어로 사이버 또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가 있다. 그러나 사이버 또는 온라인의 개념은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폭력 미디어를 제작하는 행위까지도 망라하는 개념으로 이하 ‘디지털’을 사용한다. 또한 사회의 법익에 반하는 음란물을 포괄하는 성범죄와 구분하여 개인인 피해자가 실존함을 강조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로 통일한다.¹⁰⁰⁾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분류

1.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이하 유포형)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대방 본인의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동의 하에 유포된 모든 영상, 사진, 녹취, 초상화 등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국산 몰카 야동,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 게재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주로 신상 정

100)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 게재를 동반하여 어플, P2P사이트, 디지털 성폭력 범죄사이트, 강간약물 또는 몰래 카메라 판매 홍보 등에 사용된다.

2.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이하 제작형)

몰카 촬영, 동의 하 촬영 후 비 동의 하에 소지하는 것, 사진 도용 후 성적으로 2차 제작을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몰카 촬영은 주로 휴대폰과 소형위장카메라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를 이용한 도둑 촬영이 문제가 되어 한국은 2004년에 카메라 촬영음을 60데시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어플 시장이 형성되며 얼마든지 휴대폰을 이용한 무음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제조사가 카메라 촬영음을 탑재하더라도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였음에도 강제성을 띠는 몰래카메라 촬영 방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광고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부의 몰래카메라만을 탐지할 뿐 안경, 자동차 열쇠, 단추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앞에서는 10~20만원 대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1600만원짜리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무용지물이라는 마찬가지이다.

동의 하 촬영 후 비 동의 하에 소지하는 경우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으로 2차 창작하는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 또한 규제가 느슨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 제작의 경우 SNS 계정에서 이루어지는데, SNS 운영원칙 위반으로 신고하여도 “커뮤니티 운영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3. 참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이하 참여형)

골뱅이¹⁰¹⁾ 강간모의,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 제보 및 능욕 댓글 남기기로 구분된다. 참여형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가해임에도 문제의식 없이 이를 그저 유희거리 중 하나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골뱅이 강간모의는 주취 또는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리는 유포형과 병행되며, 댓글로 여성의 생식기에 이물질 넣는 것을 요구하거나 집단 강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등 댓글을 통한 능욕이 수반된다. 심신미약상태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비단 소라넷과 같은 음지의 음란사이트에서만 인식의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골뱅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며 주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가 된 여성의 모습을 성적대상화하고, 대중매체에서는 그런 여성을 성상품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온라인 성희롱과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이 그저 하나의 유희거리로 향유 되는 것에 일조한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차 굳어가고 있다.

4. 소비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이하 소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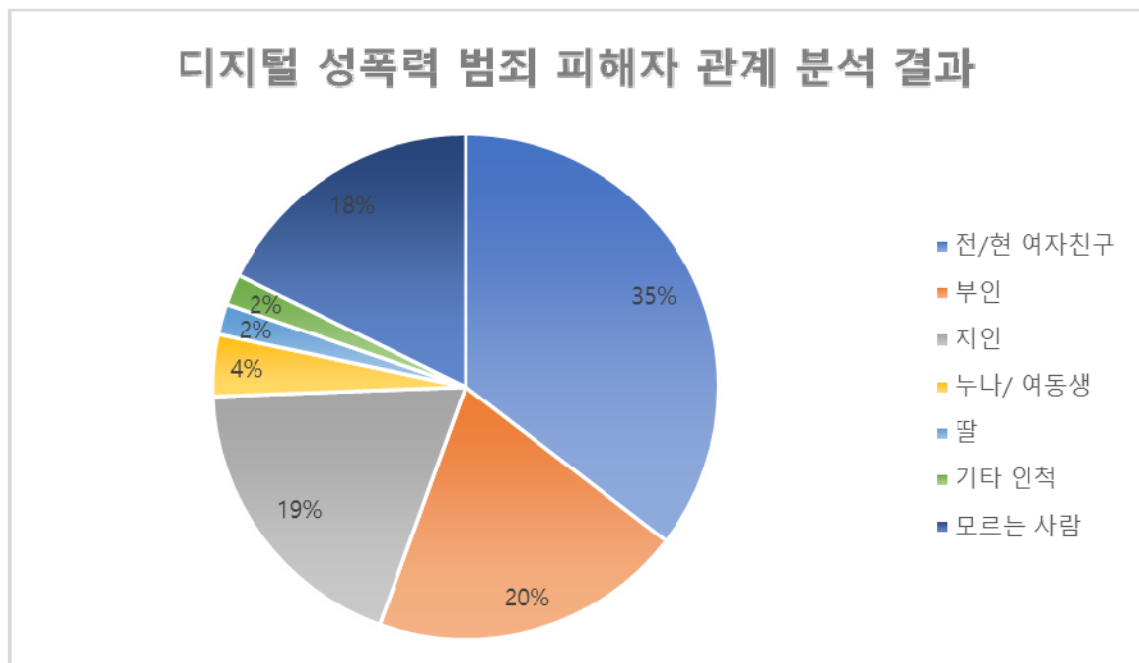
101) 주취 또는 약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인 여성을 지칭하는 은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 또는 사진을 소비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상¹⁰²⁾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평균 95%가 여성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여성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 30대 여성이 29%, 10대 여성이 15%로 나타났다.



피해대상은 주로 가해자와 친숙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연인관계에 있거나 있던 여성이 35%로 가장 높고 부인이 20%, 지인이 19%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이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피해가 18%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한국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1997년 7월이다. 소위 “빨간 마후라 비디오”는 1997년 당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빨간 마후라 비디오”는 세 명의 남학생 가해자

102) 출처: 2015년 10월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부터 2017 최근까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모니터링 분석결과, (2017.08) D.S.O 모니터링팀 전선미, 윤제이

가 한 명의 또래 여학생을 집단 강간하는 것을 가정용 8mm 비디오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이다.

가해자들은 해당 영상을 학교에서 판매하였고, 비디오는 복제되어 서울 청계천의 세운상가에서 성인들 사이에서 포르노로 소비되었다. 1997년 당시 중앙일보 기사 “세운상가 포르노상 '빼끼'와의 흥정 (실제상황)”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대한 경찰 단속 중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었고 암암리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검거되어 음화제조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되었다.

1998년의 소위 “O양 비디오” 사건은 제작형 범죄 중 소지와 광범위한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시사한다. 해당 사건은 합성옥이 여성 연예인 O씨와 연인관계일 때 제작한 사적인 비디오 테이프를 친한 친구들에게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10월 피해 여성이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으니 1억원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협박편지를 받고 상대방인 합성옥을 추궁하자, 그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는 법정 진술로 미루어 보아 합성옥은 해당 영상을 피해 여성의 비동의 하에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¹⁰³⁾ 또한 해당 비디오 테이프를 분실한 것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당 비디오를 누군가가 훔쳐 외부에 유출하였고, 언론사가 “유명 연예인의 섹스 스캔들”이라며 해당 영상의 존재와 피해자를 공개하여 유포를 확산시켰다. 이에 제작형 가해자인 합성옥은 이에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당 비디오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하여 2000년엔 성인방송 진행자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 다음해인 1999년 유포된 “B양 비디오” 사건은 동의하 촬영이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유포에 따른 피해는 동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전(前) 매니저로, 불화로 양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후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사회는 위 사건의 피해 여성들에게 ‘문란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이에 여성 청소년 피해자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두 연예인은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해당 연예인들이 복귀한 뒤에도 위의 영상들은 현재까지도 “고전영상”이라는 타이틀로 유포되며 주홍글씨처럼 남아 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풍조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느슨한 처벌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청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주요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5년 341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6735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 중 24.1%를 차지 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05년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2004년 휴대폰 제조 시 촬영음을 의무적으로 장착할 것을 권고할 정도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는 2015년 8월, 인터넷에 유포된 워터파크 샤워실과 탈의실 몰래카메라 영상의 배경이 대기업의 워터파크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조명되었다. 수사 결과, 한 남성이 인터넷에 유포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여성에게 돈을 주고 대규모 워터파크의 샤워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를 포르노로써 소비하는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그 중 가장 큰 사이트 소라넷이 전면에 가시화 되었다.

소라넷은 2016년 4월에 폐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 소라넷과 유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사이트는 약 50개 정도로,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닌 단순 음란물이라는 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한국에는 성인 대상 소비형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동 대상 소비형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령이 설 정성을 갖지 못한다.

언론사들은 그간 아동 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벌을 보도할 때 “교복입은 여성 음란물, 아청법 처벌?”, “‘이 영상도 걸릴까요?’ 아청법이 두려운 사람들”,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고, 2017년 외교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캐나다 입국 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한 소아성도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공지를 게재하였다.

103) 99 가합 109817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에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것을 인지하고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조차도 가해자를 걱정하는 나라에서 위와 같은 법률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적용

근 20년간 디지털 산업은 압축적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¹⁰⁴⁾에 해당하며,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사용¹⁰⁵⁾할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에 비해 현재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 한국보다 인터넷 사용률, 스마트폰 보급률 등 디지털 매체의 보급률이 뒤쳐지는 몇몇의 선진국들은 이미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법제화를 마련하였으나, 한국은 IT강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대응이 느리다.

1. 적용되는 법률

제작형 가운데 몰래카메라는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이하 성폭법 14조)』¹⁰⁶⁾로 처벌이 가능하다.

유포형에는 『성폭력 특별법 제13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성폭법 13조)』¹⁰⁷⁾와 성폭법 14조를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¹⁰⁸⁾를 위반한 혐의로 동법 제 70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을 유포했을 때, 피

104) 윤미진,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자 유형에 따른 댓글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논문, (2010) pp 9-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보급률 세계 1위이며,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한달 평균 이용시간은 19시간 220분이라고 한다

105) 2016년 3월 기준, 세계 주요 50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9.5%라고 한다. TNS, KT경제경영연구소

106)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7)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8)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해자가 특정될 경우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더할 수 있다.

참여형 중 골뱅이 강간모의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성폭법 14조, 정통법 44조에 위배되며, 심신미약자를 강간하기 위해 ‘초대남’ 을 모집한 경우 상황에 따라 미수와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가 달라지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 온라인 성희롱 또한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성폭법 13조에 해당하고 정통법 44조를 위반, 70조에 해당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2. 법률 요건의 한계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주로 성폭력 특례법 13조와 14조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 2014도6309에 따르면 법률 구성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대목은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 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가?
- ②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④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 ⑤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

이와 같이 현행 성폭력 범죄는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좁은 구성 요건을 형성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비해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성폭력 범죄는 음란물과 같이 사회의 법익에 반하는 범죄가 아니라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요건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느슨한 처벌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보다 성공적인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추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피해자 특정 요건은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어 이 또한 성립이 어렵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법률 요건의 문제도 존재한다. 일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은 물론 형사소송 또한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인/연예인 능욕 합성의 제작과 제보,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동의하 촬영 후 비동의 하에 소지 등의 가해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합성 제작자 및 유포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능욕 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친권자의 도움 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률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관과 배정 판검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 법률 해석의 적용

법률 요건의 폭이 좁아 처벌이 느슨한 것은 주로 참여형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강간모의 댓글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온라인에서 목격하고 신고한다 해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어렵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일반 시민이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증거수집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즉,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피해 인지는 물론 피해 입증 또한 어렵다.

참여형의 디지털 기반 성희롱 중 능욕 댓글 등 온라인 상의 성희롱은 신상정보가 게재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렵다. 비친고죄인 성폭법 13조로 신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 또는 실수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약식 벌금 30만원이 최대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사는 지역과 이름 또는 신체의 일부만 촬영되거나 얼굴 사진 하나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요건 때문에 신고 접수가 반려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이름, 사는 곳이 모두 노출 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고 접수가 어렵고, 고소 절차에서 직접 자신의 성기와 얼굴을 채증 하여 수사관이 이를 읽는 모습을 봐야하는 등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많아 상당수가 고소를 포기한다. 설령, 피해자가 끝까지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라넷과 같이 해외 서버에 기반한 가해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도 하다.

iv.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1990년대에 성행하던 일반인 대상 몰래카메라 범죄는 음지에서 성행하다 1997년 일반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빨간 마후라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대두 되었으나 피해자도 가해자와 함께 처벌된 판례가 있다.

O양 비디오사건¹⁰⁹⁾의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에 출연남성인 원고 함성욱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 지법은 2000년, 해당 사건을 보도한 4개의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닌 일부 기사에서 사생활 침해만을 인정해 35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B양 비디오 사건¹¹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형사15 단독 판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8년이 지났고 B씨가 재기한 상황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다” 라고 판결, 가해자 김 모씨를 징역 3년형에 처했다. 먼저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징역 8

109) 99 가합 109817

110) B양 비디오'유포 前 매니저 징역3년(종합)_연합뉴스

개월, 홍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사법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소라넷이 공론화된 2015년,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조심하여 예방하라는 캠페인을 했고, 2017년 현재 지방 경찰청이 배포하는 스티커는 몰래카메라를 한순간의 실수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경찰의 수사태도를 잘 반영한 사례이다.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i.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소라넷이 가시화 되면서,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시민 행동 프로젝트도 생겨났다. 2015년 10월에 결성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RPO(Revenge Porno OUT)는 서초 경찰서와 연계하여 소라넷에 잠입하고 실시간 강간, 윤간 모의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때 소라넷에서 약취 또는 주취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여 “#불법강간약물박멸”이라는 이름으로 강간약물 온라인 판매 근절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듬해 2016년부터는 소라넷처럼 해외에 기반한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모니터링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해외사이트 고발 프로젝트, 법제화 활동, 사이버 방범대 활동, 강연/교육 활동, 사회 인식 고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의 리벤지 포르노의 Revenge(복수)대신 단어 정화운동을 통하여 리벤지 포르노를 연인간의 유포형 범죄로 명명하고, 유포형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D.S.O(Digital Sexual aussult Ou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ii. 입법부의 인식 개선 노력

1. 경찰의 인식 개선

"성폭력 범죄 신고 시 경찰 출동 의무화" (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법률 요건 개정

(1) 2016. 09. 12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14조제2항).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한다(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2) 2016. 12. 15 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별에 따른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4조).

(3) 2017. 01. 02 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다.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안 제14조).

(4) 2017.03.08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통해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신체가 아니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¹¹¹⁾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의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화상채팅 등을 통해 노출된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신체 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4조제1항).

(5) 2017. 05. 24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위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14조).

해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

—

111) 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I. 일본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본은 일찍이 관련 입법을 통해 테이트 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커 행위 규제법)』을 제정하고 2013년 개정을 통해 그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실정성을 높였다. 또한 2013년에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배우자 폭력 방지법)』을 제정했다.¹¹²⁾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일본의 『사생 성적 화상 기록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 방지법)』이 빠르게 입법 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법령은 2013년 10월 도쿄 미타카시에서 일어난 ‘미타카 스토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으며, 2014년 11월에 시행되었다. ‘미타카 스토커 사건’은 21세의 남성인 가해자가 18살의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에 업로드 한 사건이다.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1.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촬영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촬영과 유포를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촬영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한한다. 법에서 정의 하는 ‘몰래’의 법률적 요건은 ‘상대의 허락이 없었을 경우’와 ‘상대가 감춘 것’이다. 즉,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할 경우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민폐 방지 조례와 경범죄법으로 처벌되며, 피해자는 명예훼손,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폐 방지 조례는 각 도나 부, 현마다 다른 처벌을 하는데, 도쿄도의 경우 "공공 장소 또는 대중 교통에서 옷으로 감춰진 속옷 또는 몸을 촬영한 사람일 때는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하루 이상 30일 미만으로 구류되거나 1,000엔 이상 10,000엔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건물 등에 침입한 것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12) 관련 내용 : 김혁, “일본의 테이트 폭력 대응 법제에 관한 고찰” (2016.06), 경찰학 연구 제16권 제2호

2.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일본의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 방지법은 면식법에 의한 유포형, 제작형 범죄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1) 디지털 성폭력 법안의 법적 정의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에 관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특정 전기 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 배상 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례 및 해당 제공』 등에 대한 법률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서 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 피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제 2 조 (정의)

1.이 법률에서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화상을 말한다. 단, 촬영의 대상이 된 자(이하 "촬영 대상자"라 한다.)가 촬영한 자, 촬영 대상자 및 촬영 대상자에서 제공 받은 자 이외의 사람(다음 조 제1항에서 "제3자"이라 함)이 열람하는 것을 인식하고, 임의로 촬영을 허락하거나 촬영을 한 것을 제외한다.

① 성교 또는 성교 유사 행위와 관련되는 사람의 자태

② 타인이 사람의 성기 등 (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만지는 행위 또는 사람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또는 사람이 남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자태로써,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

③ 옷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자태로서, 일부러 사람의 성적인 부위가 노출되거나 강조되어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

2.이 법률에서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이란 화상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등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이며,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 기타의 기록을 말한다.

제 3조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 제공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자가 촬영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 항의 방법으로 사사로운 성적인 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진열한 사람도 동항과 동일시한다.

3.1,2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성적 화상 기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1항부터 3항까지 죄는 형법 제 3조의 예에 따른다.

영상의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책임 제한법의 특례법』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의 특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정보의 송신을 차단하여 해당 조치로 송신이 금지된 정보의 발신자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특정 전기 통신에 의한 정보이며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에 관련된 것의 유통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이하 "명예 등"이라 한다.)을 침해당한 촬영 대상자가 (해당 촬영 대상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의 친족 또는 형제 자매에 한한다.) 명예 등을 침해했다며 사사로운 성적 화상 침해 정보(이하 "정보"라 칭함), 명예 등이 침해된 사실, 명예 등을 침해당한 이유 및 해당 정보가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고 해당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사로운 성적 화상 침해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2.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사로운 성적 화상 침해 정보 발신자에게 대한 해당 정보 등을 제시하고 해당 정보 송신 방지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 여부를 확인 했을 경우
3. 발신자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을 경과해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해당 정보 송신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 없었을 경우.

제 5조 지원 체제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해당 제공 등 관련 범죄 사실의 신고를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사 기관의 체제의 충실, 사사로운 성적 화상 침해 정보 송신 방지 조치의 제안을 하는 경우의 신청자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주지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내실화, 피해자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일원적으로 그 상담에 응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6조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개발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 등이 확산된 경우는 그 피해의 회복을 피할 현저하게 어려워질 것을 감안하면 학교를 비롯한 지역, 가정, 직역 기타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자기에게 관련된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 등과 관련한 자태의 촬영을 하지 않기, 스스로 기록한 자기에 관한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들의 촬영, 제공 등의 요구를 하지 않기 등 사사로운 성적 화상 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

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활동 및 계발 활동의 충실을 꾀한다.

3. 영상 삭제 책임 소재

일본은 2001년 11월 30일 법률 137호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해당 법률은 모욕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특정 책임을 ISP의 책임자(사이트 운영자)로 제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즉,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이를 안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하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ISP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요건은 그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3조 제1항은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기초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불이행에 기초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포함한다.

iii. 유포형으로 보는 일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상

1. 꾸준한 증가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마다 관련 범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헤어진 애인 등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상담이 지난해(2016) 1063건으로 2년째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2. 여성 혐오 범죄

2015년 연인간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1041명으로 전체 신고상담 건수(1143건)의 91.1%를 차지하며, 2016년 신고 상담 건수(1063건)의 92%가 여성에 해당한다.

3.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 가해자와 피해자 집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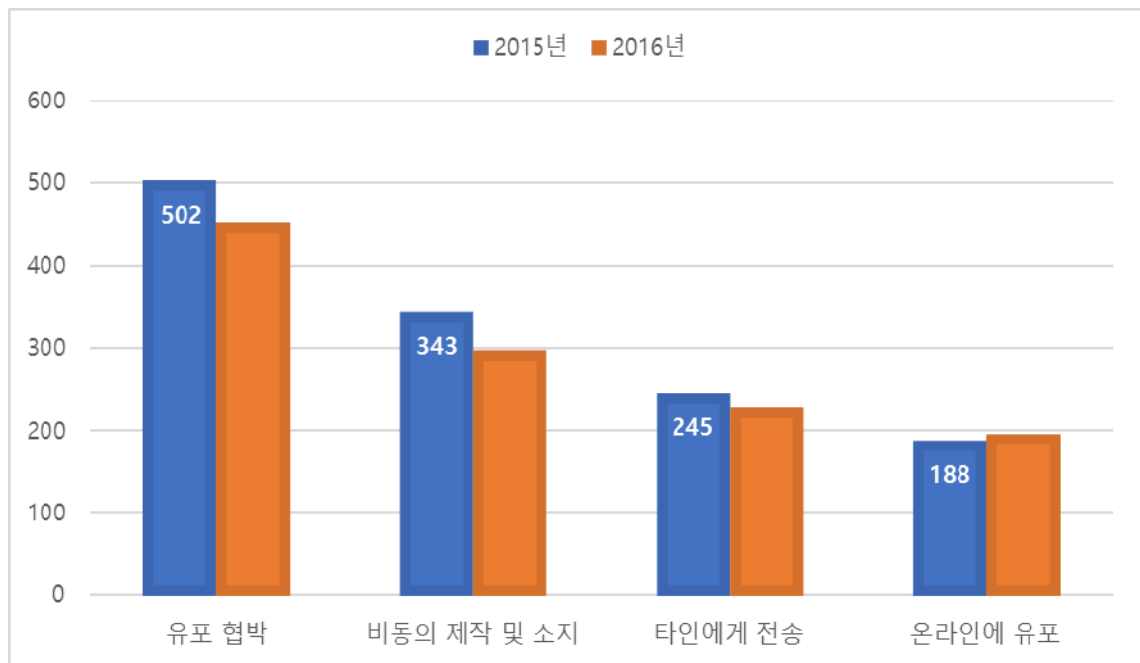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피해자가 434명(38.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가 257명(22.5%), 19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자가 223명(19.5%), 40대 170명(14.9%), 50대 42명(3.7%), 60대 7명(0.6%), 70세 이상 3명(0.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30대가 264명(23.1%)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20대 251명(22.0%), 40대 208명(18.2%) 미성년자 116명(10.1%), 50대 94명(8.2%) , 60대 30명(2.6%) ,70대 이상 11명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에 대해서는 면식범일 확률이 96.2%로 나타났다. '교제 상대'(원조 교제 포함)였다는 응답이 725건으로 63.4%를 차지했다.

4. 가해 양상



가장 많이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가해는 ‘유포 협박’ 이1위, ‘비 동의하에 촬영 후 소지하는 것’이2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 이 3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 이 4위로 나타났다. 2016년엔 가해유형이 조금 더 다양해져 그 가운데는 우편으로 전송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15년에 접수된 신고 상담 1143건 가운데 276건에 대해 가해자를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구속했다. 544건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주의·경고(영상 삭제 요청 포함) 조치를 내렸고, 67건은 해당 영상이 게재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신고 접수된 피해는 1061건으로, 그 중 가해자를 적발한 건수는 268건이다. 연 인간 제작 및 유포형 범죄 피해방지법으로 검거된 것은 48건 이었으며, 그 외에는 협박, 아동 매춘 포르노 금지법 위반, 스토키 규제법 위반,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한 기록이 있다. 이어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주의나 경고를 준 수는 571건,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한 수는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적용

일본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법률 요건은 ‘옷으로 감춰진 속옷 또는 몸을 촬영한 것’이다. 즉, 수영장 같은 곳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할 경우에는 처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몰래카메라 촬영 시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성폭력 범죄 중 연인간의 유포형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이듬해에 바로 관련 법률이 입법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에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작 및 유포형 피해 확산 방지법 6조의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개발이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나타난다. 이러한 법의식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성공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

II. 독일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과 달리 독일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포르노 그래피와 구분 된다. 독일에서는 포르노 그래피 시작 부분에 이것이 연출되고 유포에 동의한 포르노그래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 동의하의 촬영 및 유포는 사생활 침해로 처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 해결 확률이 높다. 단적인 예로, 독일은 2014년 경찰청 통계에서 “폭력으로 인한 죽음”, “성적인 이유 또는 젠더 기반 폭력”을 집계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명시했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 중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78%, 아동 대상 성착취에서는 85.1%, 강간 등에 대해서는 81%의 성공적 기소 확률을 보였다.¹¹³⁾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113) Common Core Docu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16

1. 대표적 판례

2014년 5월, 독일의 코블렌츠 지방 고등 법원은 한 여성이 사진가인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교제 당시 원고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누드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일반적 인격권의 해석은 기본법 제1조 1항 및 제2조 1항을 기반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개인의 소유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여 남성이 사적으로 간직한다 하더라도 유럽인권협약(EMRK)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권을 근거로 “잊혀질 권리”에 따라 파트너에게 과거의 모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2.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독일은 비동의 하의 촬영 및 제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제22조 초상권¹¹⁴⁾을 들어 당사자의 초상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즉, 배포 및 전시에 동의하지 않은 능욕 합성, 비동의 하의 촬영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201조a에 의하면 주거 또는 시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자를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이를 중계(전송)하여 고도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법률은 침해범이 아닌 위해범으로서 비 동의 하에 촬영 후 소지 하는 것도 처벌 할 수 있다. 이어진 2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를 통하여 제작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 이라는 법률 요건에서 오프라인 상의 유포 혐의 또한 처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작형 범죄의 정범 및 공범이 사용한 사진기 및 사진 촬영 장치 또는 다른 기술적 수단은 형법 제74조a 몰수 확장의 요건에 근거하여 몰수할 수 있다.

3.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로부터 명예에 대한 과소평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법 제18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단, 이 법률은 촬영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유사하게 제작형과 유포형에 관련된 법률로는 형법 제201a조가 있다.

형법 제202a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인 정보, 권한이 없는 정보를 게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지인/연예인 열사 및 능욕합성 유포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

4. 참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참여형 중 디지털 기반 성희롱은 형법 제185조에 의거하여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해당 내용이 폭력적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외 지인/연예인 열사 능욕 합성 제보와 강간/윤간 모의 글을 게재할 경우 제202조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114) 제 22조 초상권; 피사체가 되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 전시가 가능하다.

에 처한다.

5. 피해자에 대한 보상

피해자는 민법에 의거하여 부작위청구권, 제거청구권, 불법행위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영상 유포 및 기타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최소 5000유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연방데이터 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BDSG)Section. 35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가해에 사용된 이미지는 데이터 보정을 하더라도 지체 없이 삭제한다.

iii. 독일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특징

독일의 형법에서 정의하는 ‘고도의 사적인 생활 영역’은 은밀한 사생활 영역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적 생활 영역 보다는 그 범위가 좁다. 고도의 사적인 생활 영역은 일반적인 인격권과 정보자기결정권의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¹¹⁵⁾

독일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의 법률 요건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의 법률 요건보다 범위가 넓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참여형 범죄와 제작형 중 소지에 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III. 영국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현황¹¹⁶⁾

2014~2015년의 기소 건수는 21,580건이었지만 2015~16년에는 4.5% 증가하여 22,545건이 기소되었다. 여기에는 사진을 통한 아동 성적 착취에 대해 시작된 고소 16,672건이 포함되며 아동의 음란 사진을 소유한 것과 관련된 기소 건수는 428건 (8.9%)이 증가하여 5,248건의 기소가 시작되었다.

커뮤니케이션법 127조 하에서, 2015~16년 극도로 모욕적이고 음란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소는 2,026건으로 20.6%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방해, 불편, 타인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 것과 관계된 기소는 1.9% 하락하여 848건이었다. 커뮤니케이션법 127조 하의 총 범죄 횟수는 13% 증가했고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1조 하의 횟수는 32% 증가했다. 또한 음란물 발행법¹¹⁷⁾으로 2014~15년 5,782건이 기소되었

115) 무권한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형법적 보호 : 독일 형법 제201조a의 입법,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7)

116)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Crime report 2015-16, CPS(영국 공공기소국)

117) 1959년과 1964년의 음란물 발행법(Obscene Publications Acts, OPA)을 통해 음란물의 발행에 대한 법이

고, 2015~16년에는 20% 증가하여 6,940건이 기록되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극도로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기소가 증가하여 2015-16년에는 1,737건에 달했다.

2.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동향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015년 4월에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어 2016년에 리벤지 포르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른 주정부들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법안을 제정하거나 입법 예고를 하였다. 일례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6년에 성폭력 전담반을 두 배로 증원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유포형 가해자를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17년 3월 남녀의 누드사진 위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공기소국은 2016년 3월부터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신종 범죄를 구체화하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다루기는 검사들에게 자세한 도움말 및 정확한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그 중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강간 혹은 폭행에서 사디스트적 행위의 대상이 되어 매우 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포함된, 극도로 모욕적인 대화(communications)를 여성에 대한 신종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하고 강제, 위협하기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스파이웨어(spyware), GPS 추적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동향을 지적하였고, 합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공개하고 통제 혹은 강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법률 요건

- ①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 ② 수치스러운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
- ③ 트롤링: 위협적이거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 채팅방, 혹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전송하는 것

정립되었다. 음란에 대한 정의는 1959년의 음란물 발행법 1조 1항에 나와 있다. 해당 범죄는 1959년 음란물 발행법 2조에서 등장하며,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출판물은 1959년 음란물 발행법의 대상이 된다. 이 법 아래에서, 음란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기사라도 그것을 발행한다면 범죄가 된다. 즉, 법정에서 보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누군가가 보고, 듣거나 혹은 읽는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2008년의 형사정책법 및 이민법 세부 항목 63에서 67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누군가의 항문, 가슴, 생식기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수간, 시간을 범죄라고 규정한다. 또한 등급이 매겨진 영화에 대한 예외 규정도 존재하며, 범죄에 대한 변론과 형벌도 나와 있다. 해당 범죄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었다.

- ④ 아동을 온라인 게임, 온라인 활동 혹은 온라인 친구 그룹에서 배제시키는 것
- ⑤ 특정 아동에 대한 혐오 사이트 혹은 그룹을 만드는 것
- ⑥ 아동·청소년들에게 자해를 부추기는 것
- ⑦ 찬성 혹은 반대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인 투표를 하는 것
- ⑧ 아동·청소년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그들의 온라인 신분을 훔쳐서 이용하는 것
- ⑨ “섹스팅”이라고 알려진 것. 즉,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 ⑩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이미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성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

2. 섹스팅¹¹⁸⁾

영국은 각 주마다 독자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지만, 섹스팅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아동 보호법, 형사정책 보호법, 성범죄법을 적용한다. 아동 보호법은 만16세 미만인 아동의 성적인 사진 혹은 가짜 사진을 촬영, 제작, 공개, 유포,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 혹은 이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피해 대상이 아동이 아닌 성인일 경우에도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또한 성범죄법에 경찰의 의무를 고지하여 성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공유되었다면 경찰은 반드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섹스팅은 아무런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동의 노골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아동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을 위반하게 된다.

- ① 본인 혹은 친구의 노골적인 사진/영상을 촬영한 경우
- ② 노골적인 사진/영상을 공유한 경우, 심지어 또래 아동 사이에서 그것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 ③ 노골적인 사진/영상을 소지, 다운로드, 저장한 경우. 아동이 그것을 제작해도 된다고 허락했을 경우에도 이는 불법이다.

3.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

영국은 디지털 기반의 성희롱 또한, 교육법을 적용해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부적절한 이미지 또는 자료를 찾을 경우 자료를 찾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폭력과 연계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제한한다. 커뮤니케이션법 127항은 학교의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이

118) Sex + Texting

고, 음란하며,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

참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 중 지인/연예인 능욕합성의 경우, 성희롱 보호법과 형사정책 및 공공 질서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하다.

또한 명예 훼손법에서는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에 대한 영상의 책임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둔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송한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사건들 가운데 기소된 것에 대한 지침’을 뒤 미디어 메시지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여 다룰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항목 2는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의 사이버 불링에 관한 법률은 관습법에 근거하여 기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의 사이버 불링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에 기반한 사이버 불링 또한 처벌한다.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판례

1. 제작형_강간 포르노그래피

한 피고의 이전 파트너가 그 피고의 컴퓨터에서 극단적으로 포르노그래피적이고 성적인 아동의 이미지들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의 성적인 사진과 비디오가 100개 넘게 발견되었고 소수의 극도로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강간을 표현한 이미지들도 있었다. 그는 유죄를 인정했고 3년 동안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 받았다. 또한 법원은 그에게 5년간 성적 위해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2. 유포형_디지털성폭력 범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폴란드에서 출발한 피고는 영국으로 여행 와서 매춘이 포함된 여행을 계획하고 그에 자금을 댔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일곱 개의 매춘 업소를 운영하고 온라인 성인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여성들의 서비스를 광고했다. 그에게 내려진 구금형에 더하여, 판사는 피고에게 최초의 노예 및 밀거래 방지명령을 내렸다. 명령의 조항에 따라, 피고는 여행이 제한되고 누구를 위해서든 교통 및 숙박을 준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신분이 나와 있는 서류를 소지할 수 없고, 피해자 16인 가운데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으며, 한 대의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고 성 산업에 관련된 사람과 함께 거주하거나 차로 여행할 수 없고,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그가 영국에 살게 되면 언제나 경찰에게 그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유포형_리벤지 포르노

- 1) 페이스북을 통해 한 여성의 가족에게 그녀의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고 더 많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다고 협박한 피고가 본인이 합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공개했다는 범죄를 인정한 후, 그에게 12주의 구금과 1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 또 다른 피고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진을 그녀의 친구에게 전송했다. 해당 피고(남자)는 18주의 집행 유예와 감시가 따르는 귀가 시간 제한을 받고 비용 지불 및 보상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3) 한 여성의 남자 형제에게 그녀의 사진들을 보낸 후, 그 피고는 12주 징역과 3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4) 한 슈퍼마켓 안팎에서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진을 배포했다. 그는 24주간 구금형을 선고 받았고 1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접근 금지 명령, 비용 청구를 받게 되었다.

5) 피고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피해자는 사진이 찍혔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12개월의 사회봉사 명령, 110파운드 벌금을 받고 재판비 292파운드를 지불할 것과 무기한의 접근금지명령을 선고 받았다.

4. 참여형_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착취

한 경찰관이 3년에 걸쳐 7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아 그들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그는 성적인 이미지와 사진을 전송했으며 세 명의 피해자와 성행위를 했다. 한 피해자는 13개월 동안 9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받았다. 가해자는 4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5. 참여형_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및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

한 경찰이 어리고 취약한 여성들을 구했고(groomed), 친구와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에게 접근했으며 성접대의 대가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돈을 지불했다. 배심원단에 게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했던 여성들은 17-26세였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8년간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IV. 호주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호주는 공통적으로 연방법률 형법 474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괴롭히거나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모든 주가 연인간 유포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위 말하는 리벤지포르노 법이 제정된 곳은 VIC(빅토리아), NSW(뉴사우스웨일즈), SA(사우

스오스트레일리아), WA(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이다.

1. SA주(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디지털 성폭력에 관련한 법률을 입법하기 전, SA주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해 감시 및 도청 기기법1972(SA)의 s4조에 의거하여 주로 사적인 음성을 불법 녹취 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때, 고의적으로 카메라 또는 도청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않은 음성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음성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법률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2013년 , SA주는 호주에서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해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Summary Offence ACT 2013의 26조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영상 및 이미지 제작과 유포에 대해 명확한 법률 요건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은 17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포형의 처벌을 최대 징역 2년 또는 \$10,000의 벌금형에 처하고,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1년 또는 \$5,000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2016년 10월, 갈수록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법률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노출된 가슴, 또는 속옷차림의 사진을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신체 노출에 대한 법률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포형 피해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의 벌금을 선고하고, 유포형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2. VIC주(빅토리아 주)

VIC 주의 도청기기법령 1999(Vic) s7조 는 ‘음성 녹음(기록)을 포함한, 동의하지 않은 사적 행위’ 에 대한 시각 기록물을 금지하였다. 즉, SA주와 달리 오디오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시각기록기기에 대한 규제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 법령 s 3 조에 따르면 건물 바깥, 혹은 타인의 시선이 있을 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길거리에서의 몰래카메라를 규정하는 법률 요건은 충분치 않았다.

VIC주는 2014년 10월에 the *Crimes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를 입법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만17 세 미만인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의 벌금이 선고되며, 유포형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의 벌금이 선고된다.

3. NSW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NSW주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이전에 도청 기기 법 s8 2007(NSW) 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등 시각적 레코딩 기기는 사유지에 대한 침해를 포함할 경우에만 금지하

였다. 이와 같이 사적 이미지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인 법률 요건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자, 2014년 사적 이미지에 관한 범죄 법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에 추가적으로 개정하였다.

해당법안은 형법 1900을 수정하여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알려진, 행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적 이미지의 유포를 처벌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적 이미지를 기록, 유포하거나 기록,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위법 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에게는 최대3년의 징역형, \$10,000의 벌금, 혹은 둘 모두를 구형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1Q에서는 2차 유포의 피해도 고려하여 타인이 사적 이미지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혹은 동의 유무에 개의치 않고 동의를 받지 아니한 타인의 사적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포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최대 2년의 징역형, \$50,000의 벌금 혹은 둘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

4. WA주(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적 행위와 대화를 담은 시각/음성 정보의 녹화/녹음”으로 제한하고 도청기기법 1998 (WA)으로 처벌하였다. 해당 법령 s 3조항에 언급된 ‘사적 행위’와 ‘사적 대화’ 등의 정의는 포괄적이었고 동의 없이 녹음된 사적 행위/대화의 출판 또는 게재는 동 법령 s9조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구성원들이 그들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대화가 합리적으로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의 도둑촬영은 처벌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범죄에 대한 법률 473 조를 적용 할수 있다. 컴퓨터로 콘텐츠를 전시하는 행위, 컴퓨터로부터 나온 다른 생산물 또는 해당 콘텐츠를 컴퓨터 내에서 혹은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이동하는 행위, 콘텐츠가 프로그램일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악의를 가지거나 위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할 경우는 최대 3년의 징역을 구형한다. 여기서 사법부가 인터넷의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그래피티와 반달리즘 법안 2016에 의거하여,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 됐을 시 재산 및 범죄에 이용한 촬영 기기와 저장장치를 몰수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형법으로 처벌하는 다른 주와 달리 WA는 2016년 9월 가정폭력법을 강화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해당 법률은 가족 간의 스토킹 혹은 사이버 스토킹 행위, 가족 간 사적 이미지의 유포와 게재, 혹은 유포와 게재를 하겠다는 협박 행위를 가정 폭력의 정의에 추가하였다. 사적 이미지를 유포/게재한 자에게 최대 2년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되었다.

ii. 호주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법률의 특징

호주에는 개인의 이름, 별명, 닉네임, 이미지 등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면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사생활보호 법안 또한 없다. 하지만 사업체와 기관들이 개인의 이미지를 출판/공표

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을 1988(Cth)을 위반하는 상황에 한하여, 개인의 이미지는 ‘개인정보’의 구성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사적 이미지는 ‘합리적인 개인이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부위 또는 개인이 사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이미지’를 뜻하며 합리적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부위 또는 개인이 사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조작, 변형된 이미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주에서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열람 또는 능욕 합성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부터 온라인 상의 유포 피해 정도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미국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주에만 존재하였다. 기존의 법에 의하면 50개 주 어디서든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형사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승소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2015년에는 25개 주에서 금전적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입법하였고, 2016년에는 유포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해 첫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다.¹¹⁹⁾ 미국에 거주하는 네티즌의 4%인 약 1040만명이 리벤지 포르노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전체 대상 중 약 3%가 누드 또는 이에 가까운 자신의 성적인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또 2%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자신의 허락없이 성적인 사진,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¹¹⁹⁾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법안

본 법안들의 “사적 부위”는 알몸, 노출된 성기, 여성의 유두, 엉덩이를 지칭하며, “성적 접촉”은 동성, 이성간의 행위를 막론하고 성기 대 성기, 구강 대 성기, 항문 대 성기, 구강 대 항문 간의 행위를 포함한 성행위를 지칭한다.

119) 2016년 12월 미국 공중보고 연구소 통계

1. 메릴랜드 주

메릴랜드 주는 2차 유포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타인이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 또한, 유포형과 같이 인의 정체를 노출하거나, 타인의 사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타인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필름, 비디오 테이프, 녹음물, 종류를 막론한 타인의 이미지의 복사본을 게재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위의 행위를 하였을 시, 징역2년 혹은 \$5000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범죄 위반으로 분류된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부위가 포함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개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3만달러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총 4단계의 처벌 수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보통 3단계에서는 최고 징역 5년에 1만5000달러(약 16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때는 예외적으로 3만 달러(약 32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관련 규정에는 '공개(disclosure)'라는 개념으로 범죄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행위에는 매매·제작·증여·배달·전송·출판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2. 플로리다 주

고의적으로 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사이버 성희롱 하는 일은 1급 경범죄로 분류되며 섹션775.082 또는 775.083 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 성희롱의 전과가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 있는 이가 두 번째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3급 중범죄로 분류하며 섹션775.082, 775.083, 또는 775.084 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법 집행자는 이 섹션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자를 영장 없이 구속 할 수 있고, 슬서가 나오면 본 섹션에 대한 위반을 더 깊이 조사 하기 위해 수색영장이 발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적 주거지에 대한 영장(가택 수색영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소 \$5000을 포함하여 금전적 손해 및 가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시간 주

미시간 주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안에서 “개인이 본 사항을 위반, 혹은 위반을 시도함과 동시에 다른 법 위반을 했을 때, 다른 법안으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라고 가중 처벌 가능성을 명시했다.

2016년의 유포형 범죄의 피해자 여성에게 500,000\$(오억 이상)를 배상하라고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들이 급격하게 사라졌다고 한다.

4.애리조나 주

애리조나 주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가 전자기기를 통해 공개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한다. 이때, 개인이 타인의 이미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1급 경범죄로 분류한다.

5. 웨스트 버지니아 주

그 어떠한 개인도 타인을 괴롭히거나, 겁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치욕 또는 수치를 줄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강압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던 개인의 성적인 행위가 드러나거나 혹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된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유포하거나, 유포를 하는데 일조하거나, 유포를 할 수도 없다.

위를 위반한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최대 1년의 징역형 선고받거나, 혹은 최소 \$1000에서 최대 \$5000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 선고 받을 수 있다. 재범은 중죄에 해당하여, 주립교정시설에서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최소 \$2,500에서 최대 \$10,000을 선고받거나, 두 가지 모두 선고 받을 수 있다.

